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가이드북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가이드북 

2015. 6



<b>01. 사회적협동조합 개요</b> .....	<b>06</b>
<b>02.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b> .....	<b>10</b>
1. 설립절차 .....	10
2. 설립인가신청시 필요서류 .....	12
3. 설립인가신청 이후 처리 절차 .....	13
<b>03.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신청서류 작성방법</b> ...	<b>16</b>
1. 설립인가신청서 .....	16
2. 정관사본 .....	18
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	51
4.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53
5. 임원명부(임원이력서 및 사진 포함) .....	55
6. 사업계획서 .....	57
7. 수입지출예산서 .....	77
8. 출자 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출자자 명부) ..	81
9.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	82
10.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	83
11. 주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 .....	83
<b>04.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이후 절차</b> .....	<b>88</b>
1. 설립인가증 발급 .....	88
2. 설립 사무의 인계 .....	89
3. 출자금 납입 .....	89
4. 설립등기 .....	89
5. 사업자 등록 .....	91
<b>05. 벌칙 및 과태료</b> .....	<b>94</b>
<b>06. 제출 첨부 서류 양식 모음</b> .....	<b>100</b>



# 01 사회적협동조합 개요

# 01 사회적협동조합 개요



## 1. 사회적 협동조합의 정의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

## 2. 사회적 협동조합의 특징

〈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점 〉

구 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 인 격	■ (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설 립	■ 시도지사 신고	■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인가
사 업	■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경영공시	■ 의무사항 아님 ※ 조합원수 200인 이상 또는 출자금 납입 총액이 30억원 이상	■ 의무사항
법 정 적 립 금	■ 잉여금의 10/100 이상 ※ 출자금 납입 총액의 3배에 이를 때까지	■ 잉여금의 30/100 이상 ※ 출자금 납입 총액의 3배에 이를 때까지
배 당	■ 배당가능	■ 배당금지
청 산	■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 비영리법인·국고 등 귀속
감 독	■ 감독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관계법령을 위반할 경우 처벌	■ 필요시,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업무상황, 장부, 서류 등 검사 ■ 인가요건 위반시 인가 취소

### 3. 사회적 협동조합의 주사업 유형

- ▮ 사회적협동조합은 법 제93조제1항 각호에 따른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사업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주 사업은 전체 사업량의 40% 이상이어야 함

#### 〈 사회적협동조합 주사업 유형 〉

구분	유형	사업
1	지역사업형	지역사회의 재생,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지 증진 및 그 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2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취약계층에게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	취약계층 고용형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4	위탁사업형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기타 공익증진형	그 밖에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사업

\* 두가지 이상 주사업 유형을 수행하는 경우, 각 사업에 해당하는 비율의 합이 100분의 40 이상인 경우, 주사업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 가능



# 02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

1. 설립절차
2. 설립인가신청시 필요서류
3. 설립인가신청 이후 처리 절차

# 02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



## 1. 설립 절차

기본법 제85조(설립인가 등)
<p><b>제85조(설립인가 등)</b> ①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p> <p>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인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설립인가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li> <li>2. 설립의 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li> <li>3. 그 밖에 설립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li> </ol> <p>④ 제1항 및 제3항의 설립인가에 관한 신청 절차와 조합원 수, 출자금, 그 밖에 인가에 필요한 기준, 인가 방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중간지원기관 활용**

- 협동조합 설립시, 협동조합 설립 컨설팅, 설립 교육, 신청서류 검토 등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간지원기관을 적극 활용

※ **처리기간**

- 「7. 설립인가증 발급」은 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발급
- 서류 보완 등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 연장 가능**

## 참고

## '15년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통합 지원기관

**대표번호 (전국공통) 1800-2012** ※ 대표번호를 누르면 아래에 있는 해당 지역의 지원기관과 연결

지역	지원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서울	(사)한국 마이크로 크레딧 신나는조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07-39, 200(충청로 2가, 본관)	070-7600-0507, 0510	02-365-0440
경기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020 번길 7(파장동, 덕성빌딩2층)	070-4763-0130	070-4763-0120
인천	(사)사회문화정책 연구원	인천광역시 남구 경인로 229 인천T타워 1층 117호	032-245-7901	032-245-7904
강원	강원도사회적 경제지원센터	강원도 원주시 호저로 47	033-749-3352	033-749-3345
대구 경북	(사)커뮤니티와경제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 182 2층 (대명 9동 724-1번지)	053-956-5001~3	053-217-5003
부산	(사)사회적 기업연구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883 현대빌딩 2층	051-517-0266	0303-3261-1119
울산	사회적협동조합 울산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거리 14, 2층 (옥교동)	052-267-6176	052-267-6177
경남	사단법인 경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북성로10(중성동, 3층)	055-263-2931~2	070-7545-2931
광주	(사)광주NGO 시민재단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43 BYC빌딩 7층	062-383-1136	062-381-1135
전북	(사)전북사회경제포럼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새터로 122-11 (애플러스빌딩 301호)	063-251-3388	063-251-3348
전남	(사)전남지역발전포럼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635 석현빌딩 301호	061-287-4566	061-287-4577
제주	(사)제주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광로 241-1(삼도일동, 영지빌딩7층)	064-722-4843	064-755-4843
대전	협동조합 대전사회적경제 연구원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로 10번길 9 풀뿌리시민센터 2층	042-223-9914	042-222-0906
충북	(사)충북 사회적경제센터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226 (운천동, 5층)	043-222-9001	043-223-9201
충남	(사)충남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충청남도 아산시 순천향로22 순천향대학교 공과대학 9130호	041-415-2012	041-415-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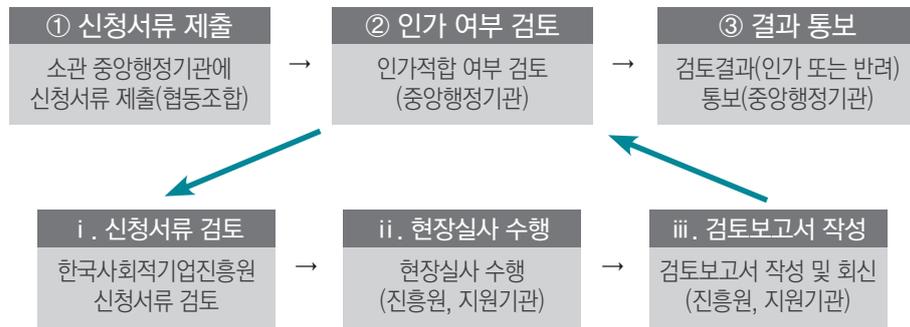
## 2. 설립인가 신청시 필요 서류

시행규칙 제14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인가 신청) 준용	
제14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인가 신청) ② 영 제18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사본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임원이력서 및 사진을 포함한다)	
5. 해당 연도의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6. 해당 연도의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수입·지출 예산서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 발기인 및 법 제85조제2항 및 제114조제2항에 따라 창립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명부	
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법 제101조제1항 및 제115조제3항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사본	
10.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한다는 증명하는 서류	

구분	인가신청서류*	비고
1	설립인가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2	정관 사본	표준정관례 활용
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신청서류 예시 ①
4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신청서류 예시 ③
5	임원명부(임원이력서 및 사진 포함)	[임원 명부]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임원 이력서] 신청서류 예시 ④
6	사업계획서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7	수입·지출예산서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8	출자 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신청서류 예시 ⑤
9	발기인 및 설립동일자 명부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10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법정 서식 없음
11	주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법정 서식 없음

\* 06. 제출 첨부 서류 양식 참고(100 페이지 이하)

### 3. 설립인가 신청 이후 처리 절차



#### ① 신청서류 검토 요청(신청기관→중앙행정기관)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인가 신청

#### ② 인가 여부 검토(중앙행정기관)

- 중앙행정기관은 발기인 제출한 신청서류 등을 확인하여 인가여부 검토

i) 신청서류 검토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설립신청서류 검토

ii) 현장실사 수행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중간지원기관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준비상황, 설립취지, 준비과정 등의 확인을 위하여 현장실사\*

\* 신청서류 보완이 필요하거나, 사업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확인을 위한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신청기관에 보완 요청

iii) 검토보고서 작성 :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를 종합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에 회신

#### ③ 결과통보(중앙행정기관→사회적협동조합)

- 중앙행정기관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검토결과 등을 참고하여 인가 여부 결정 및 통보



## 03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서류 작성 방법

1. 설립인가신청서
2. 정관사본
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4.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5. 임원명부(임원이력서 및 사진 포함)
6. 사업계획서
7. 수입지출예산서
8. 출자 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출자자 명부)
9.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10.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11. 주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



## 설립신청인

설립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설립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되, **설립 신청인**이 ① **개인**일 경우 '성명', '생년월일' 등 개인 인적사항 기재, ② **법인**일 경우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기재

## 법인

법 인	조합명(연합회명)	전화번호
	소재지	
	이사장(회장)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조합명과 연락처, 주사무소 소재지, 이사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사장 주소, 연락처를 기재  
※ 법인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으므로, 이사장의 개인정보 기재

## 설립신청 내용

설립신청 내용	설립동일자 수(명)	출자금 납입총액(원)	창립총회 개최일
		1인당 최저 출자금(원) <small>*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만 작성</small>	총자산 대비 출자금 납입총액의 비율(%) <small>*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만 작성</small>

### 체크 포인트

- ❖ **(설립동일자수)** 「설립동일자 명부」 및 「출자자 명부」의 인원 수와 동일하게 기재
- ❖ **(출자금납입총액)** 「출자자 명부」의 출자금 총액과 동일하게 기재
- ❖ **(창립총회 개최일)** 창립총회 공고문, 창립총회 의사록의 창립총회 개최일 기재

## 설립목적

설립목적	<input type="checkbox"/> 지역사회형(「협동조합 기본법」 제 93조제 1항제1호) <input type="checkbox"/>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협동조합 기본법」 제 93조제 1항제 2호) <input type="checkbox"/> 취약계층 고용형(「협동조합 기본법」 제 93조제 1항제 3호) <input type="checkbox"/> 위탁사업형(「협동조합 기본법」 제 93조제 1항제 4호) <input type="checkbox"/> 기타 공익증진형(「협동조합 기본법」 제 93조제 1항제 5호)
------	--

- 두 가지 유형 이상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중복하여 표기

## '신청인'란에 신청인(개인 또는 법인) 성명 기재후 기명날인

## 2. 정관 사본

### 1) 정관 작성 시 유의사항

- 정관이란 협동조합의 조직형태, 운영방법 및 사업활동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최고의 자치법규
- 필수 기재사항(협동조합기본법 제86조 제1항) 반드시 포함

기본법 제86조(정관)
<p><b>제86조(정관)</b> ①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목적</li> <li>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li> <li>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li> <li>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li> <li>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li> <li>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li> <li>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li> <li>8.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li> <li>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li> <li>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li> <li>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li> <li>12. 해산에 관한 사항</li> <li>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li> <li>14. 그 밖에 총회·이사회 등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li> </ol>

#### ■ 표준정관례 활용

- ‘**사회적협동조합 표준정관례**’ (협동조합 홈페이지(coop.go.kr) → 알림마당 → 자료실”)를 참고하되, 사회적협동조합 고유의 특징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작성

#### ■ 정관의 자율성

- 기본법 제86조제1항 각호의 사항은 반드시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나, **그 외의 사항은 자유롭게 규정**
- 협동조합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정관에 규정할 필요는 없으며, 필요한 경우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규약 또는 규정을 마련**(법 제17조 준용)

#### ■ 신청서류 제출시 정관은 사본제출

## 2) 정관의 작성(※사회적협동조합 표준정관례 해당 조항 참고)

### 1 목적

**제2조(목적)**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조합 활동을 통하여 ----- 위하여 ----- 을 목적으로 한다.

- 사회적협동조합의 주사업 유형에 맞는 **기관 고유의 설립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

###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1 설립과 명칭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 명칭에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반드시 포함

-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명칭의 위치는 앞·중간·뒤 모두 가능하나, **설립인가 신청 시와 등기 시 "사회적협동조합"의 위치가 동일하여야 함**
  - ⇒ '사회적AAA협동조합'과 같은 명칭은 사용 불가
  - ⇒ 설립인가 신청시에는 영문명칭(ex. APPLE 사회적협동조합)도 사용가능하나, 등기시에는 한글 또는 한글·영문 병기(ex. 애플 협동조합 또는 애플(APPLE) 사회적협동조합)

- (동일 명칭 사용 제한) 동일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에서 다른 협동조합\*이 등기한 명칭 사용 금지

\* 협동조합 기본법 및 기존 8개 개별법상 협동조합 포함

- (동일명칭 확인)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iros.go.kr) → 법인등기 → 열람하기 → 상호로 찾기"에서 명칭 입력

- (협동조합 명칭 사용 제한) ① '○○농업협동조합' 등 기존 8개 개별법상 협동조합이 고유하게 사용하는 명칭 사용 금지 및 ② 사업구역과 사업분야·조합원 구성을 병기함으로써 다른 협동조합과 구별되는 명칭을 사용하여 혼동 최소화

#### 2 사무소의 소재지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시·도에 두며, 규정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정관상 주소는 협동조합의 편의를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까지 명시 가능

※ 상세주소를 정관에 기재시, 주소 변경시마다 정관 변경을 위한 총회 개최 및 중앙행정기관의 인가를 득해야 하는 등 추가적인 절차 필요

###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 I 조합원의 자격

**제10조(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①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 조합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자조합원: 조합의 생산활동 등에 함께 참여하는 자
2. 소비자조합원: 조합의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3. 직원조합원: 조합에 고용된 자
4. 자원봉사자조합원: 조합에 무상으로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
5. 후원자조합원: 조합에 필요한 물품 등을 기부하거나 자금 등을 후원하는 자

- "**조합원**"이란 협동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를 의미

-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는 **외국인, 국내법인, 외국법인** 모두 조합원으로 가입 가능(외국법인의 경우 외국인 출자규제관련 법률에 적합해야 함)

- 미성년자\*는 조합원으로 가입 가능하나 민법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 절차 필요

\* **민법상 만 19세 미만인 자를 의미**(민법 제4조)

#### I 대리인의 자격

**제37조(대리인이 될 자격)** 전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 대리인의 자격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함

#### **【대리인 선임의 절차 및 효과】**

■ **(효과)**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야금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간주

■ **(절차)** 대리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원본)을 협동조합에 제출

-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조합원 총회가 개최되기 이전에 대리인을 특정하여 지정하며, **사전에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대리인의 의결권 및 선거권 무효**

##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 I 조합원의 가입

**제11조(조합원의 가입)** 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④ 조합은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 협동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있어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으나,
-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부합되는 자로 조합원 자격 제한 가능

### I 출자증서등의 교부

**제19조(출자증서등의 교부)** ①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조합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조합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3. 조합 가입 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6. 발행 연월일

②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조합원의 출자금액 변동상황을 조합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 전자메일, 팩시밀리,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 협동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의 요청에 따라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조합원에게 발급

Ⅰ 조합원의 탈퇴

**제14조(탈퇴)** ① 조합원은 탈퇴하고자 하는 날의 ○일 전에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 지위의 양도 등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파산한 경우
4. 후견선고를 받은 경우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 "탈퇴"란 협동조합이 존속하는 중에 조합원이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이탈하는 것으로, 탈퇴에 의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에서 갖고 있던 일체의 권리·의무 상실
-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 가능
- 필요에 따라, 조합원 당연탈퇴 사유를 별도로 정관에 규정

Ⅰ 조합원의 제명

**제15조(제명)**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법령·행정처분·정관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효력이 없다.

④ 조합은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명"이란 협동조합이 특정한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을 의미하며, **총회 의결\***이 필요
- \* 제명 의결시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조합원 제명 사유는 필요에 따라 별도로 정관에 규정
- 제명하고자 할 때는 제명 절차를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① **총회 10일 이전 제명사유 고지** 및 ②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

## I 통지 및 최고방법

**제7조(통지 및 최고방법)**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하고, 통지 및 최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연락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곳으로 한다.

- "최고"란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상대방에게 요구(촉구)하는 의사를 알리는 것으로 제명 등의 사유로 조합원에게 통지할 사안이 발생할 경우 조합원 명부에 기재된 주소 또는 조합원이 지정한 연락처로 7일 이상 통지

##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 I 출자

**제18조(출자)** ① 조합원은 ○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원으로 한다.

- ②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 ③ 출자금은 일시에 납입한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2회로 나누어 납입할 수 있다.
- ④ 제3항 단서의 경우 출자 제1회의 납입금액은 출자금액의 2분의 1로 하고, 제2회 납입일자는 제1회 출자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 ⑤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 ⑥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조합 또는 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 조합원은 1좌 이상 출자해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해야 함
-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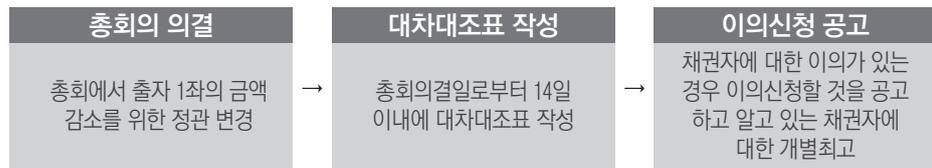
### I 출자금액의 감소의결

**제21조(출자금액의 감소의결)** ① 조합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 ② 조합은 출자 1좌의 금액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
- ③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 ⑤ 그 밖의 출자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 "출자 1좌의 금액"은 정관 필수기재사항이므로, 출자 1좌의 금액의 감소를 의결하기 위해서는 총회에서 정관을 변경
- 정관의 변경은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총회에서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의결하면 협동조합은 의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
- 대차대조표 작성기간(14일) 동안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에 이의신청할 것을 공고
- 동시에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최고(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 최고의 효력발생 시기는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민법 제111조제1항)



**I 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제22조(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21조의 이의신청 기간에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채권자가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
- 이의 신청시 협동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해야 함

## ⑥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 조합원등의 권리 등

#### Ⅰ 조합원의 권리

**제36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제58조(운영의 공개)** ④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이사장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 조합원은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출자좌수에 상관없이 가지며, **조합 운영 상황에 대한 공개**를 이사장에게 청구 가능

#### Ⅱ 탈퇴·제명조합원의 출자금 환급 청구권

**제16조(탈퇴·제명조합원의 출자금환급청구권)** ①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은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출자금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 조합원등의 의무 등

#### Ⅰ 조합원의 의무

**제11조(조합원의 가입)**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제15조(제명)**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조합원의 고지의무)** 조합원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 조합원은 약정한 출자금을 **납부할 의무**를 가짐
- 조합원은 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의무**가 있으며, 정관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사업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제명될 수 있음
-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여 조합원에게 의무 부여가능

**Ⅰ 조합원의 책임**

**제13조(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17조(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① 탈퇴한 조합원의 출자금 환급분을 계산할 때 이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한 조합원은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출자액의 범위에서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납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액의 납입 청구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을 준용한다.

- 조합이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변제하지 못할 경우 환급되지 않는 탈퇴 조합원의 출자금으로 채무를 갚을 수 있으나, 조합원은 납입한 출자금 한도 내에서만 책임

**Ⅶ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Ⅰ 손실금의 보전**

**제69조(손실금의 보전)**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익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25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 발생하는 잉여금은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다.

- "손실금(당기손실금)"이란 총수익이 총비용 보다 적은 경우 발생하는 금액으로 **법인세를 차감한 이후의 손실금**을 의미
-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당기손실금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익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 8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I 법정적립금

**제25조(법정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법정적립금"이란 법령에 의해 적립이 강제되어 있는 적립금으로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30% 이상 적립**

- 사회적협동조합은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법정적립금 사용 금지

### ❖ 법정적립금 관련 용어

구분	내용
잉여금	순재산액이 법정자본금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회계상 당기순이익
잉여금의 종류	자본잉여금 : 자본거래를 통해 발생
	이익잉여금 : 영업활동 등 손익거래를 통해 발생
순재산	총자산으로부터 총부채를 뺀 것으로, 자본준비금 · 이익준비금 · 이익잉여금 등의 합계액으로 자기자본(출자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및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합산하여 산정)이라고도 함
법정자본금	회사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회사가 유지하여야 할 최소한의 자본으로 협동조합의 경우 출자금 총액을 법정자본금으로 간주

### I 임의적립금

**제26조(임의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25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〇〇 이상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사업개발비, 교육 등 특수 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 "임의적립금"이란 협동조합이 임의로 적립한 것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 가능하며, 사업준비, 시설확장, 사업활성화, 결손보전 등으로 사용 가능

##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사업의 종류

**제60조(사업의 종류)** ①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하고,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이상으로 한다.

1. ○○○ 사업
2. ○○○ 사업
3. ○○○ 사업

②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기타 사업으로 할 수 있다.

1. ○○○ 사업
2. ○○○ 사업
3.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4.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5.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③ 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④ 이 조합은 주 사업의 목적 및 판단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수행할 사업방식은 ○○로 한다.

⑤ 주 사업 및 기타 사업은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

-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합의 필요 사업을 정관에 규정
-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목적, 명칭, 조합원 구성 등과 맞지 않게 **백화점식 나열은 지양**
- **관계법령**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이 수행 가능한 사업을 기재

#### \*제한 사업 예시\*

1.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음
2. 타법상 면허 및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은, 「영유아보육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의료법」, 「경비업법」등
3. 「농지법」에 의하여 협동조합 자체는 농지구입 불가능

### 주사업 작성

- 정관 제60조 제1항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의 주사업으로 수행될 사업의 종류 기재
- 동조 제4항에서, 「주 사업의 목적 및 판단기준」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하는 주사업 유형에 따라 **아래 작성예시 중에서 선택하여 기재**

사업유형	주사업 내용	판단기준	작성예시
지역 사업형	주 사업이 '지역사회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인 경우	① '사업비'로 선택하는 경우	지역사업형으로 하며 수입·지출 예산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을 주 사업 목적으로 지출할 것으로 한다
		② '서비스공급'으로 선택하는 경우	지역사업형으로 하며 사업계획서상 주 사업에 해당하는 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으로 한다
취약계층 고용형	주 사업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인 경우	① '인건비'로 선택하는 경우	취약계층 고용형으로 하며 수입·지출 예산서상 전체 인건비 총액 중 취약계층인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일 것으로 한다
		② '서비스공급'으로 선택하는 경우	취약계층 고용형으로 하며 사업계획서상 전체 직원 중 취약계층인 직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일 것으로 한다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주 사업이 '취약계층에게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 경우	선택 불필요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으로 하며 사업계획서상 취약계층에게 제공된 사회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사회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으로 한다
위탁 사업형	주 사업이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인 경우	선택 불필요	위탁사업형으로 하며 수입·지출 예산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예산일 것으로 한다
기타공익 증진형	주 사업이 '그 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는 사업'인 경우	① '사업비'로 선택하는 경우	기타공익증진형으로 하며 수입·지출 예산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을 주 사업 목적으로 지출할 것으로 한다
		② '서비스공급'으로 선택하는 경우	기타공익증진형으로 하며 사업계획서상 주 사업에 해당하는 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으로 한다

**기타사업 작성**

- 주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은 제2항에 “기타사업” 으로 기재하며, 제2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은 협동조합 운영상 필수적인 사업으로 반드시 포함
- 소액대출 사업, 상호부조 사업을 수행할 경우 기타사업에 표기

**I 소액대출**

**제61조(소액대출)** ① 조합은 상호복지 증진을 위하여 제60조의 주 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조합원을 대상으로 납입 출자금 총액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액대출을 할 수 있다.

② 조합원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조합원에 한해서 대출자격을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액대출을 할 때 조합원 1인당 한도는 500만원으로 한다.

④ 소액대출 이자율은 0%로 한다.

⑤ 소액대출 연체이자율은 0%로 한다.

⑥ 대출 종류, 대출 종류별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대출절차와 상환 등 소액대출 사업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⑦ 조합은 정기적으로 대출 조합원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거래내용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며, 대손충당의 구체적 적립수준 등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⑧ 소액대출 사업은 제60조에 따른 주 사업 및 기타 사업과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

- "소액대출"은 조합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생계비, 주택자금 등 소액자금을 신용대출해 주는 사업으로, **선택사항임**
- **대출자격, 1인당 대출한도, 대출이자율·연체이자율, 대출위험관리, 회계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기재
- 소액대출 한도는 **납입 출자금 총액의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으며, 조합원의 수, 출자금 규모, 소액대출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정관에 규정
- 소액대출 이자율의 최고 한도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를 고려, 연체이자율의 최고한도는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최고 이자율(연 25%) 범위 내에서 정관에 규정
- 소액대출의 총사업한도, 이자율, 대출한도 등을 초과 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법 제119조 제2항제4호)

## I 상호부조

**제62조(상호부조)** ① 조합은 조합원 간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조합원들이 각자 나눠 낸 상호부조회비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그 기금으로 상호부조회비를 낸 조합원에게 혼례, 사망, 질병 등의 사유가 생긴 경우 일정 금액의 상호부조금을 지급한다.

② 조합원 가입 후 ○개월이 경과한 조합원 가운데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조합원에 한해서 상호부조사업 참여자격을 가진다.

③ 조합원 1인당 상호부조의 범위는 ○원 이내로 한다.

④ 제1항의 상호부조회비는 ○원으로 한다. 상호부조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은 상호부조 회비를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

⑤ 상호부조 계약은 조합의 상호부조사업부 또는 계약사업부와 조합원 간에 직접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제3의 판매조직이나 금융기관과의 제휴를 통한 계약은 허용되지 않는다.

⑥ 상호부조 회비 적립금의 운영은 지나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예금 및 국공채 이외의 주식, 회사채, 여타 시장성 증권에 투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상호부조계약의 양식, 상호부조 회비의 사용, 상호부조 회비의 환급 등 사업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⑧ 상호부조 사업은 제60조에 따른 주 사업 및 기타 사업과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

- "상호부조"란 조합원간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각출한 상호부조회비를 적립금으로 하여 상호부조회비를 납부한 조합원에게 혼례, 사망, 질병 등 정관에서 정하는 사유가 생긴 경우에 일정 금액의 상호부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선택사항임**
- 상호부조사업의 참여자격과 사업의 범위, 상호부조금의 지급 사유, 사유별로 지급되는 상호부조금의 한도 등 상호부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함
  - ※다만, 상호부조 사업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 규약으로 규정 가능
- 조합원이 낸 회비로 운영하여야 하며, 출자금 또는 차입금 등을 기금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 ※ 상호부조계약과 상호부조회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적립금 운용)** 적립한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할 수 있으나 적립된 기금이 주식, 회사채, 기타 시장성 증권에 투자하지 않도록 함
- **(대손위험관리)** 상호부조 사업의 대손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정관에 적절한 대손위험 관리방안이 있는지 확인
- **(제3자 계약금지)** 상호부조 계약은 협동조합과 조합원 간에 직접 이루어져야 하며, 금융기관이나 보험기관 등 제3의 판매조직을 통한 계약 불가

- 사회적협동조합이 상호부조의 총사업한도, 상호부조의 범위, 상호부조금, 상호부조계약 및 상호부조회비 등을 초과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119조제2항제4호)

## 회계연도

**제65조(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로 한다.

- 조합은 1년 단위로 회계연도를 설정

※ 회계연도란 회계의 편의를 위하여 설정한 일정기간으로, 매년 1월 1일부터를 회계연도로 설정한 경우 마지막 시점은 12월 31일까지로 규정

## 회계 및 특별회계의 설치

**제66조(회계)**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당해 조합의 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특별회계는 조합이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제67조(특별회계의 설치)**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자금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1. ○○사업
2. ○○자금

-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며, 조합의 상황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 여부 결정

- 예를 들어 소액대출, 상호부조를 위한 적립금은 주사업 및 기타사업과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

## 결산

**제68조(결산등)** ① 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감사에게 제출하며, 감사의 의견서와 함께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

##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제64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회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 기관

#### 총회

- 제27조(총회)** ① 조합은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 "총회"란 조합원 다수의 의사에 의하여 협동조합의 의사를 결정하는 협동조합의 필수 기관 및 최고 의사결정기관을 의미
-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되며, 이사장이 의장으로서 총회를 소집하고 의사를 진행

#### 대의원총회(선택적 의결기구)

- 제28조(대의원총회)** ① 조합원의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제10조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각각 선출한다. 다만, 선출할 대의원 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④ 대의원의 정수는 〇〇명 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〇년으로 한다.  
 ⑤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⑦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⑧ 대의원총회는 조합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 조합원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총회 구성 가능  
(기본법 제92조(준용규정), 시행령 제9조)
- "대의원총회"란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총회에 갈음하여 협동조합의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으로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
-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 정수는 대의원 선출 당시 조합원 총수의 10% 이상  
(다만, 대의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명으로 할 수 있음)
-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이 행사 불가
- 협동조합의 **합병·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총회 의결사항으로 대의원총회에서 의결 불가
- 이사장과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이사장이 의장으로서 대의원총회를 소집하고 의사를 진행

## I 이사회

**제41조(이사회)**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조합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서 구성하고 이사장 1인 외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을 둘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전원이 회의목적 사항과 회의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이사장은 제5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이사회"란 협동조합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으로,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되며, 이사장은 의장으로서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사를 진행
-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조합원 수가 10인 미만인 협동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 이사회를 두지 않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정관에 법 제33조의 이사회 의결사항 중 이사장이 결정할 사항과 총회에서 의결할 사항을 명시

## 임원

### I 임원의 정수

**제45조(임원의 정수)** ①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명 이내의 이사와 1명 이상 ○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다만, 이사는 제10조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임원 중 이사회 호선에 의해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

- 협동조합의 임원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로 구성**

### I 임원의 선임

**제46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는 총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사는 총수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이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는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 조합원이 아닌 자의 임원 선출을 반드시 규정할 필요는 없으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으로 선출 가능
- 임원은 자연인만 선임 가능하며, 법인 임원은 선임 불가

## I 임원등의 결격사유

**제49조(임원등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임원에 대하여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설립신청서 제출

## I 임원의 임기

**제50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한다.

-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 임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에서 정관에 규정

- 임원은 연임 제한이 없지만, 이사장은 2차에 한하여 가능

-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최초 개시되는 임기(4년의 범위 내)를 제외하고 추가로 2차까지 연임이 가능하다는 의미

### Ⅰ 임직원의 겸직금지

**제51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는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④ 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임원은 이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의 수가 10인 이하인 조합은 해당 기간 동안 그러하지 아니하다.

- 원칙적으로 임원은 직원을 겸직할 수 없으나(법 제44조 제3항 준용), 직원을 겸직하는 임원수가 임원 총수의 1/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원이 직원 겸직 가능
- 다만, ① 조합원의 2/3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직원의 2/3 이상인 경우 (임원이 직원을 겸직하기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함), ②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인 경우 임원 총수의 1/3을 초과하여 임원이 직원 겸직 가능

### 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제52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이사회에의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②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감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 이사장은 협동조합을 대표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업무를 집행
- 이사는 협동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
- 이사장의 사고로 이사가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 및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만 이사가 협동조합을 대표

### Ⅰ 감사의 직무

**제53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연 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종합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법령·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감사”는 협동조합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감사를 주된 기능으로 수행하는 협동조합의 필수기관으로서, 회계지식을 갖추고 중립성을 견지할 수 있는 자를 감사로 선임
- 협동조합의 업무집행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

### ■ 감사의 대표권

**제54조(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 협동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을 하는 경우 감사가 협동조합을 대표

### ■ 임원의 의무와 책임

**제55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법령과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이사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가 한다.

- 임원은 법령 및 총회·이사회 의결을 준수하고 협동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
-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협동조합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

### ■ 임원의 보수등

**제56조(임원의 보수등)** ① 임원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조합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임임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 I 임원의 해임

**제57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의 사유를 서면으로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서면 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해임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 해임절차

- 조합원은 조합원 1/5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 요구
- 협동조합은 해당 임원에게 해임의 이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 부여
- 총회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임원의 해임 결의

## I 대의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

**제29조(대의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 ① 대의원은 성실히 대의원총회에 출석하고, 그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총회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의결로 대의원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자격상실 이유를 의결일 7일 전까지 통지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대의원총회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같은 안건에 대한 의결에 2회 이상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대의원총회의 의사를 방해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조합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 Ⅰ 선거운동의 제한

**제47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기간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팩스·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 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제48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조합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해 선거에 임원으로 후보등록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년으로 하되 위원이 조합원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위원의 직을 상실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주재한다.

⑤ 위원장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부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후보자 추천의 유·무효 판정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6. 투표의 유·무효의 이익에 대한 판정
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9. 당선인의 확정
10.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⑦ 위원회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적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⑧ 위원은 선거관리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협동조합은 임원 및 대의원 선거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관에 규정
- 후보자의 자격심사, 선거인명부의 확정, 선거인자격 이익신청에 대한 판정, 선거 관련 분쟁 조정, 선거운동방법 위반여부의 심사, 위반 사례 발생에 대한 조치 등
- 위원장 및 위원의 구성, 위촉기간, 자격상실 요건 등
- 위원장 및 위원의 선출방법 및 역할 등

##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 공고방법

**제6조(공고방법)** ①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또는 중앙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2 해산에 관한 사항

### 해산

**제거조(해산)**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  
 1. 총회의 의결  
 2. 합병·분할 또는 파산  
 3. 설립인가의 취소  
 ② 이사장은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 "해산"이란 협동조합이 본래의 활동을 정지하고 청산절차로 들어가는 것으로 협동조합의 권리능력 상실
- 해산과 동시에 법인격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청산종결 전까지 존속하다가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에 비로소 소멸

### 청산인

**제72조(청산인)** 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청산"이란 파산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 그 재산관계를 원만하게 처리하고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절차

### Ⅰ 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제73조(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조합이 해산 후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귀속한다.

1. 상급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2. 유사한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
3. 비영리법인·공익법인
4. 국고

-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할 경우 부채 및 출자금을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한 사항에 따라 ① 상급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② 유사한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 ③ 비영리법인·공익법인 ④ 국고에 귀속

### Ⅰ 합병과 분할

**제70조(합병과 분할)** ① 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합병**"이란 두 개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이 청산절차 없이 하나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통합되는 행위
- "**신설합병**"이란 기존의 모든 사회적협동조합이 소멸되고 새로운 사회적협동조합을 신설하는 것이고( $A+B=C$ ), "**흡수합병**"이란 하나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이 소멸되고 하나의 사회적협동조합이 존속( $A+B=A$ )
- "**분할**"이란 한 개의 사회적협동조합이 둘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분리되는 행위

## 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 1 출자금등의 양도와 취득금지

**제20조(출자금등의 양도와 취득금지)** ① 조합원 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 출자금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출자금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른다.
- ③ 출자금의 양수인은 그 출자금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④ 조합원은 출자금을 공유하지 못한다.
- ⑤ 조합은 조합원의 출자금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조합원 지위의 양도 또는 출자금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 필요
- "지위의 양도"란 조합원으로서 갖고 있던 권리(의결권 및 선거권, 사업의 이용 등)와 의무(선거운동의 제한, 겸직금지 등)를 새로운 조합원에게 양도하는 행위
- "출자금의 양도"란 탈퇴 조합원이 갖고 있는 출자금을 새로운 조합원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출자금의 양수인은 양수한 출자금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며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 "질권"이란,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의 물건을 받아 채무자가 변제할 때까지 보유하고, 변제하지 않은 때에는 그 물건을 현금화 하여 담보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 14 그 밖에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1 총회

**제30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며,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결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승인을 위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
- ※ 모든 사회적협동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의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영 공시를 하도록 의무화(시행령 제12조제3항)

**제31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3. 감사가 조합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② 이사장은 제1항 제2호(제57조 규정에 따른 해임 요구를 포함한다)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는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사장이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

**제33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 또는 휴업
  8. 조합원의 제명
  9.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10.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11. 차입금의 최고한도 결정

- 조합은 위 사항 외에도 총회 의결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 가능

**제32조(총회의 소집절차)** ①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제52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 공고기간이 7일 미만이라도 설립동의자 전원이 총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

**제34조(총회의 의사)**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32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총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총회에서 조합과 조합원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35조(합병·분할 및 해산등의 의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3. 조합원의 제명
4.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 Ⅰ 총회 의결정족수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관의 변경</li> <li>2. 협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li> <li>3. 조합원의 제명</li> <li>4. 탈퇴조합원(제명된 조합원 포함)에 대한 출자금 환급</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규약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li> <li>2. 임원의 선출과 해임</li> <li>3.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li> <li>4. 결산보고서의 승인</li> <li>5. 감사보고서의 승인</li> <li>6. 총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li> <li>7.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 협동조합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받지 않고 집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분

**제38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 (임시)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의, 즉 총 4인 이상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

**제39조(총회의 운영규약)** 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운영규약으로 정한다.

**제40조(총회의 회기연장)**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I 이사회**

**제42조(이사회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6.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7.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또는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제60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협동조합기본법 제92조(준용규정)에 따른 제29조에 규정된 필요적 총회의결사항은 이사회에 위임 불가

- 조합은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합의 업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 가능

**제43조(이사회 의사)** ①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이사는 이사회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44조(이사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 15 그 밖에 조합 운영에 관한 사항

### Ⅰ 조합의 책무

**제3조(조합의 책무)** ① 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② 조합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 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 Ⅰ 사업구역

**제5조(사업구역)** 조합의 사업구역은 ○○○로 한다.

### Ⅰ 공직선거 관여 금지

**제8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Ⅰ 규약 또는 규정

**제9조(규약 또는 규정)**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조합 운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규약, 규정으로 정할 수 있으며, 규약은 총회,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사항

### Ⅰ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제23조(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① 조합은 사업운영을 위하여 조합원 및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

1. 기본회비
2. ○○할 목적으로 ○○에게 징수하는 특별회비
3. ○○사용료
4. ○○수수료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부과대상, 부과금액,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③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납입할 때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부과금에 있어서 조합원등에 대한 부과금액의 산정기준 사항에 변경이 있어도 이미 부과한 금액은 변경하지 못한다.

- 조합의 사업내용 및 특성에 따라 경비 및 사용료, 수수료에 관한 조항을 정관에 규정 가능

Ⅰ 과태금

**제24조(과태금)** ①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과태금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③ 과태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Ⅰ 직원의 임면등

**제59조(직원의 임면등)** ①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간부직원은 이사회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Ⅰ 사업의 이용

**제63조(사업의 이용)** ① 조합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  
 2.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소액대출, 상호부조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업의 이용"이란 조합원이 소비자, 사업자, 직원의 지위에서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물품 및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것
- 사회적협동조합은 원칙적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가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으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없음

※ 비조합원이 이용할 수 없는 사업(시행령 제24조)  
 1. 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  
 2.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회적협동조합의 보건·의료사업(동조 제2항, 예외규정)  
 3. 그 밖에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 성격·유형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 〈사업의 이용(‘보건·의료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 보건·의료 사회적협동조합은 총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가능

#### ※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조합원이 아닌 자”의 범위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2.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5.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6.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
7.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 구역에 주소·거소·사업장 또는 근무지가 있는 사람
8.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사람
9.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총공급고의 산정기준은 “직전 연도 매출액” 또는 “서비스 이용 인원” 중 사회적협동조합이 선택
-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사람”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이 이사회 승인을 받으면 그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총공급고를 산정

## Ⅰ 운영의 공개

- 제58조(운영의 공개)** ① 이사장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이사장은 정관·규약·규정과 총회·이사회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③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④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이사장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이사장은 제4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 ⑥ 이사장은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약, 규정
  2. 사업결산 보고서
  3.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활동 상황
  4. 사업결과 보고서
  5.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현황

- 조합은 조합원의 개인정보보호 등 정당한 사유로 서류의 사본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정관에 규정 가능
- 사회적협동조합은 **경영공시 의무 대상**이며, 사업결과 보고서에 **정관 제60조의 필수사업은 반드시 포함**
- ※ 단, 회계연도 결산일 이전 **3개월 이내에**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는 **경영공시 대상에서 제외**

### 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 1) 창립총회 공고문 작성

## ○○○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 개최 공고

○○○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조합 설립에 참여하실 분은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시 : 20 . . (○요일) 오전 ○○시

2. 장소 : ○○시 ○○구 ○○로 ○○○-○, ○○빌딩 ○○○호

#### 3. 조합원 자격요건

가.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는 자

나.

#### 4. 의결 사항

가. 정관 확정

나. 사업계획 및 예산 확정

다. 임원 선출

라. 설립 경비 등 기타 설립에 필요한 사항

20 . . . .

(가칭) ○○○ 사회적협동조합

발기인 대표 ○○○(인)

- **창립총회 개최 전 7일 이상 창립총회 일시 및 장소, 조합원의 자격요건,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을 일간지 게재, 벽보 게시, 전자우편 등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고**

**【공고기간 산정 방법】**

- ① **총회 공고일**과 ② **총회 당일**을 제외한 7일 이상을 공고
- **5월 15일에 창립총회를 개최**한다면, 공고기간의 첫째날은 공고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최소 **5월 7일 이전에 공고**

5월 7일	5월 8일	5월 9일	5월 10일	5월 11일	5월 12일	5월 13일	5월 14일	5월 15일
공고일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총회일

- 다만, 공고기간이 7일 미만이라도 설립동의자 전원이 창립총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
- **창립총회 필수 의결사항**은 1. 정관, 2. 사업계획과 예산, 3. 임원의 선출, 4. 설립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이며, 이외 기관의 상황에 따라 의결사항을 자유롭게 규정 가능

#### 4.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 협동조합 창립총회 의사록

1. 총회 개최 공고일 : 20 . . (○요일)

2. 총회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20 . . (○요일) ○○시

나. 장소 : ○○시 ○○구 ○○○로 ○○○-○, ○○빌딩 ○○○호

3. 참석자

가. 재적 설립동의자 : ○○명(개인 ○○명, 법인 ○개)

- ○○○, △△△, □□□, … ▽▽▽(재적 설립동의자 이름 나열)

나. 참석 설립동의자 : ○○명(개인 ○○명, 법인 ○개)

- ○○○, △△△, … ▽▽▽(참석 설립동의자 이름 나열)

4. 총회 안건

- 제1호 의안. 정관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임원 선출의 건

- 제3호 의안. 20○○년 사업계획(안) 및 수입·지출예산(안) 승인의 건

- 제4호 의안. 설립경비 등 기타 설립에 필요 안건

5. 총회 내용

20 . . .

(가칭) ○○○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

이사장 ○○○ (인)

이사 또는 의사록 기명날인인 ○○○ (인)

이사 또는 의사록 기명날인인 ○○○ (인)

이사 또는 의록 기명날인인 ○○○ (인)

■ **총회 개최 일시 및 장소, 참석자, 의장 및 기명날인인 선출과정, 필수결사항, 기명 날인 또는 서명 포함**

- 필수결사항에는 ① 정관, ② 사업계획과 예산, ③ 임원의 선출, ④ 설립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

■ **의장과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가운데 창립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

-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할 자 3인을 선출하지 않았을 경우, 설립동의자 중 이사와 감사 등 임원으로 선출된 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선출된 임원이 모두 설립동의자인 경우)

**【임시의장에서 이사장으로 의장이 변경된 경우】**

- 창립총회 진행시, 발기인대표가 임시의장을 맡아 개최한 이후 임원 선출을 통해, 이사장 선출된 이후 의장직을 인계하는 경우 발생
- 의장 변경시, 변경된 의장 1인으로 기명날인시 등기과정상 원활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창립총회시 의장이 변경되는 경우, 임시의장과 의장 모두 기명날인

**체크 포인트**

- ❖ **(이사정족수 · 의결정족수)** 창립총회 전까지,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 **(의결권 및 선거권)**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
- ❖ **(임원의 선임)** 이사장 1명을 포함한 최소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사의 수가 정관에 부합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
  - 임원 선출 시 이사를 먼저 선출한 후, 선출된 이사 중에서 이사장을 선출

**<Tip: 임원 선임의 절차>**

- ① 이사 선출 완료 → 선출된 이사 중, 이사장 선출(○)
- ② 이사장 선출 완료 → 이사 선출(×)
- ※ 일부 등기소에서는 임원 선임의 절차를 위반한 경우, 등기 반려 상황 발생

- 이사장은 다른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겸직 불가
-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원은 자연인만 가능(법인 임원 불가)
- 임원은 직원을 겸직하는 임원수가 임원 총수의 1/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직원 겸직 가능

**<Tip: 임원 겸직 금지의 예외>**

- ① 조합원의 2/3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직원의 2/3 이상인 경우
- ②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인 경우



■ 임원이력서 및 사진(3x4 사이즈)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14.7.22.>

사진 (3x4)		사회적협동조합 임원 이력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		
		자택전화	이메일		@
휴대전화					
주소	( 도로명 주소 )				
등록기준지	( 도로명 주소 )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여부	※ 협동조합기본법 제36조(임원 등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년	월	일	학력 / 경력 / 자격 사항		비 고
위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작성자 : ○ ○ ○ (인)					

-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법인 임원을 선출할 수 없으므로, 임원인 개인의 인적사항만을 기재

- 이력서에 「학력 / 경력 / 자격 사항」등 기재

-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여부\*」란에 협동조합기본법 제36조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기재

\*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해 본인이 확인 후 반드시 기재하고,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원이 될수 없음

## 6. 사업계획서

## 〈사회적협동조합 주사업 유형 및 요건〉

- ◆ **지역사업형**: 지역사회의 재생,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 〈판단기준〉

가. 수입·지출 예산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을 주 사업 목적으로 지출할 것  
나. 사업계획서상 주 사업에 해당하는 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제공형**: 취약계층에게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제공 사업

## 〈판단기준〉

사업계획서상 취약계층에 제공된 사회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사회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 ◆ **취약계층 고용형**: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 〈판단기준〉

가. 취약계층에 속하는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총액**이 수입·지출 예산서상 전체 인건비 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나. 취약계층에 속하는 **직원**이 사업계획서상 전체 직원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 ◆ **위탁사업형**: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판단기준〉

수입·지출 예산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예산**일 것

- ◆ **기타공익증진형**: 그 밖에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사업

## 〈판단기준〉

가. 수입·지출 예산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을 주 사업 목적으로 지출할 것  
나. 사업계획서상 주 사업에 해당하는 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 위의 주사업 유형중 **두가지 유형 이상**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각 사업에 해당하는 비율의 합이 100분의 40 이상 일 경우, 혼합형 가능

## 작성 전 알아 두기!

- ❖ **(주사업 유형 검토)** 사회적협동조합 주사업 유형 검토시, 「① 수행 사업이 주사업 해당 여부 검토 → ② 주사업 판단 기준 충족 여부 검토」의 순서로 2 단계 검토가 이루어져야함  
↳ 본 장에서는 “① 수행 사업이 주사업 해당 여부 검토”를 위하여 대표사례를 검토하며, “② 주사업 판단 기준 충족 여부 검토”는 ‘6.사업계획서(p57)’ 및 ‘7.수입지출 예산서(p77)’를 통해서 확인 가능

## 1) 지역사업형 판단 기준

### 지역사회의 재생,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지 증진 및 그 밖에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가. 지역특산품·자연자원 활용사업 등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사회의 재생 및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

1. 지역특산품·자연자원 활용사업
2. 전통시장·상가 활성화 사업
3.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사회를 재생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나.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 지역 주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시키는 사업

1.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사업
2. 지역의 공중접객업소에 대한 위생 개선사업
3. 지역의 감염병 또는 질병 예방에 관한 사업
4. 지역의 재해, 화재 또는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업
5. 지역 주민의 고충 상담을 위한 사업
6. 지역 주민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7. 그 밖에 지역 주민들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다. 그 밖에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 I 지역사업형 주요 사례

### < 사례1 >

#### <의료사회적협동조합: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나눔과 협동의 경제를 지향하는 지역통화운동 단체 <지역 품앗이 한발레츠>와 대전 시민단체가 결합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2002년에 368명의 조합원 참여로 설립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에 따라서, 협동조합의 **공익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의료 영역을 확대하여, **지역 복지체계를 담당**하기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 결의
- 지역사업형 적합 검토: **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제1호, 3호, 6호**
  - 양방·한방 의원을 운영하여 조합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건강한 삶을 위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보건예방 활동을 통해 지역의 의료 복지 서비스를 증진**하고자함
  - 지역주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이는 **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제1호, 3호, 6호에 따른 지역사업형에 적합**하다고 인정됨

### < 사례2 >

#### <학교사회적협동조합: 복정고등학교 교육경제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 경기도 성남 지역의 복정고등학교를 중심으로, 교육의 삼주체인(학생·학부모·교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동조합을 통해, 학교 매점 운영과 이를 통한 다양한 학내 활동을 하는 협동조합 설립
  - 2010년 개교한 복정고등학교는, 학교 인근지역에 학생 편의 시설 및 학내 매점과 복사기 등 편의 부족과 건강한 먹거리 확보를 위한 논의를 구체화함
  - 조합원 다수가 학생으로 구성되어, 학생들이 교육의 주체로서 적극성을 가질수 있도록 자치적인 형태의 협동조합을 지향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운영 과정 상에 자원봉사자 조합원 형태의 학부모와 교사 조합원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구조 선택
- 지역사업형 적합 검토: **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제1호**
  - 영리적인 매점 사업이 아닌, 교육 주체의 협동을 통한 건강한 공동체로서 사업의 수익은 조합원인 학생들의 복리 증진(장학금 지급 등)을 위해 사용된다는 점과,
  - 학교를 중심으로 하여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교육 환경)등이 개선되는 효과와 있고, 이는 **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해당하는 지역사업형에 적합하다 인정됨

## 〈 사례3 〉

## 〈문화사회적협동조합: 놀이광대사회적협동조합〉

- 유통 대기업 대비 낮은 경쟁력으로 낙후된 전통시장을 문화예술을 활용하여 활성화 하겠다는 소명을 가지고, 2012년도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으로 사업 시작
  -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한 전통시장 활성화에 다양한 자원이 투자되고 있으나, 상당 수의 중소규모 전통시장이 낙후된 상태이며,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문화예술을 활용한 장기간의 프로젝트로, 전통시장이 지역주민의 만남과 소통, 그리고 즐기는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하여 전통시장의 옛 명성을 찾도록 활동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 이를 통해 열악한 처지에 있는 문화예술단체와 문화예술가들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가능
- 지역사업형 적합 검토: **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6호**
  - 문화예술 콘텐츠를 활용한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맞춤형 문화예술, 교육, 포럼, 세미나 사업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하고자 함,
  - 이는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지역특산품·자연자원 활용사업” 및 동법 제2항 제6호:지역주민에게 사회서비스(문화)를 제공하는 사업“에 해당된다고 인정됨

## 2)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판단 기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게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의 취약계층이나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취약 계층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일 것  
가. 교육, 보건·의료,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관련 사업

나. 보육, 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다.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9호에 따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①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9호” : “고용서비스”란 구인자 또는 구직자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소개, 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② “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1. 예술·관광 및 운동 분야의 사업
2. 산림 보전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과 관련된 사업
4.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사업
5. 범죄 예방 및 상담치료 관련 사업
6.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 Ⅰ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주요 사례

### 〈 사례1 〉

#### 〈장애인 대상 사회적협동조합: 다누리장애통합사회적협동조합〉

- 안양시의 장애인학교(해솔학교)의 장애를 가진 성인기의 자녀를 둔 부모들이 중심이 되어, 성인기 장애인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공감대하에 주간보호 시설, 생활시설, 보호 작업장 설립에 대한 논의 결과 주간 보호가 절실하다고 판단하여, 협동조합 설립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제공형 적합 검토: **기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 가목**
  - 장애인 대상으로, 돌봄과 자립생활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제공하고자 하여, **기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에 적합하다고 인정됨

### 〈 사례2 〉

####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일하는학교〉

- 비인가대안학교로, 2001년 설립된 학교밖청소년배움공동체 디딤돌의 선생님들이 주축이 되어 학교밖청소년 및 대학비진학청년의 진로직업 탐색과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 주 대상은 18~24세로, 이혼 등 대다수가 가정해체를 경험하고 있으며, 대안학교와 청소년쉼터를 떠난 후 아르바이트 등 저임금노동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설정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제공형 적합 검토: **기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 가목**
  - 교육대상이 취약계층 해당 여부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1호의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및 제2조5호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1호에 따른 청년 중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취약계층 대상 교육으로 인정됨**
  -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사업 수행은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른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에 적합하다고 인정됨

〈 사례3 〉

〈다문화 가정 대상 사회적협동조합: 어울림이끌림 사회적협동조합〉

- 인천지역의 다문화 가정을 중심으로 “중도입국자녀와 결혼 이민자 가족, 일반귀화자 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가정 이해교육사업, 다문화가정의 개인 및 집단상담사업, 다문화가정 중도입국자녀의 진로교육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발전을 목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제공형 적합 검토: **기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 가목**
  - 서비스 대상은 다문화가정으로 ‘결혼이민자’에 해당하여, **취약계층 대상 교육으로 인정됨**
  -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사업 수행은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른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에 적합하다고 인정됨

### 3) 취약계층 고용형 판단 기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의 취약계층이나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일 것

#### Ⅰ '취약계'층 고용형 주요 사례

##### 〈 사례1 〉

#### 〈돌봄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해피타임 사회적협동조합〉

-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인천지부에서 가정 내 모든 가사 및 돌봄을 지원하는 전문 직업인으로 여성 고령자를 활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자함
- 취약계층 고용형 적합 검토: **기본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 여성 고령자의 일자리를 만들어가기 위한 모델로, **기본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에 따른 취약계층 고용형에 적합하다고 인정됨

##### 〈 사례2 〉

#### 〈장애인 일자리 창출: 이후 사회적협동조합〉

- 장애인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지고 지속적인 직업훈련 및 근로활동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 이를 위해,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운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탁업 수행
- 취약계층 고용형 적합 검토: **기본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 장애인의 일자리를 만들어가기 위한 모델로, **기본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에 따른 취약계층 고용형에 적합하다고 인정됨

#### 4) 위탁사업형 판단 기준

※ 다른 주사업 유형과 위탁사업형의 차이점 및 유의사항

- (사업수행방식) 지역사업형 등은 사업의 **내용**에 따른 구분이 되는 반면, 위탁사업형은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수행 방식**으로 구분
- (중복가능성) 다른 주사업과 구분방식의 차이로 주사업 유형 선택시 중복 가능성이 있으며(ex. 위탁사업방식으로 사업수행하면서 취약계층 고용) 인가 이후 관리·감독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주사업을 한가지 유형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은 사업  
 업무협약 등으로 위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 (위탁사업형 주요 사례)

〈방과후 학교: 사회적협동조합 꿈앤끼〉

- “언론기관 참여 방과후학교 2차 시범사업 추진”에 참여한 경인방송, 내일신문 방과후 학교 사업단 참여자들 중심으로 발기인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양질의 방과후학교 서비스를 지역 학교에 제공하고자 설립
- 위탁사업형 적합 검토: **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4호**
  - 국·공립 학교는 국가 또는 지자체로 볼 수 있으며, 이들 국·공립 학교를 통해 위탁 받은 사업은 **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4호**의 위탁사업형에 적합하다고 인정됨
  - ※ 국·공립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립·경영하는 주체로 보고 있어, 위탁사업형의 적합한 위탁 주체로 인정됨

## 5) 기타공익증진형 판단 기준

### ※ 기타공익증진형의 유의사항

- (예외적 인정) 사회적협동조합의 다른 유형을 우선 선택하되, 선택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 (공익성 보완 설명) 예외적으로 인정하므로, 공익적 성격이 있는 사업이라는 점을 풍부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

### 그 밖에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사업

위의 네 가지 유형 이외의 사업으로서 현저히 공익증진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인정

### I (기타공익증진형 주요 사례)

#### 〈글로벌아티 사회적협동조합〉

- 음악교육 시장은, 기존에는 연주자 양성을 목적으로 기존의 1:1 레슨 방식의 교육 방법이 주가 되었으나, 교육 수요의 변화에 따라 음악교육의 대중화를 위한 교육 방법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
  - 음악교육시장의 변화에 따른 교육 수요에 적합한 교육 제공을 통하여, 문화예술 교육의 활성화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설립
  - 음악 대학원 출신으로 구성되어, 대학이 중심되어 사업수행해오고 있었으며, 외부기관과의 연계활동등을 통해 기존의 활동 상황 파악 가능
- 기타공익증진형 적합 검토: **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5호**
  - 변화된 음악교육 시장에서 교육 수요에 적합하도록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 측면을 고려하여 **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타공익증진형에 적합하다고 인정됨

##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 개념 이해하기

- ◆ **(사업비)** 조직의 일반적인 운영에 소요되는 금액이 아닌 실제 세부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의미하며 ① 제조업등 및 도소매업 등의 매출원가, ② 서비스업의 경우 서비스 제공 인력의 인건비는 사업비에 포함 가능
  - ※ 주사업 수행을 위한 인건비 투입은 사업을 위한 **직접 투입인력**과 **간접 투입인력**을 구분하여 **직접 투입인력은 사업비로 편성 가능하나 간접 투입인력은 주사업비에 불포함**
  - ※ 예시1) 학교협동조합의 건강한 먹거리 사업(매점 사업)의 매출(상품)원가는 주사업비로 편성
  - 예시2)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의료인력의 인건비는 주사업비로 편성 가능한 반면, 조합 사무국 운영 인건비는 주사업에 편성 불가
- ◆ **(경상비)** 협동조합의 일반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재
  - **(인건비)** 협동조합의 일반적인 조직운영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임직원급여, 상여금, 일용인건비, 퇴직급여, 제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일체의 비용이 포함
    - ※ 인건비에 포함되는 급여는 세전급여이며, 사업자 부담 4대 보험료, 퇴직급여 총당금도 인건비에 포함
  - **(운영비)** 협동조합의 일반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중 위의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
- ◆ **(사업외 수입 및 비용)** 사업외 수입은 이자수익 또는 후원금 등 사업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수입과, 사업외 비용은 이자비용 또는 잡손실 등 사업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비용
- ◆ **(출자금 및 출자금 반환)** 출자금은 해당 회계연도말 출자할 출자금 총액 기재
  - ※ 사업계획서의 '조직개요'상 출자금은 **설립당시의 출자금 총액**을 '수입지출예산서'의 출자금은 **회계연도말 출자금 총액**을 의미하여 불일치 가능
  - ※ '출자금 반환'은 해당 회계연도말 탈퇴 및 제명된 조합원에 대해 반환할 예상 출자금 총액 기재하나, **설립 당시 출자금 반환은 기재하지 않아도 됨**
- ◆ **(차입금 및 차입금 상환)** 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기간 동안 차입할 차입금 총액 기재, 차입금 상환은 해당 회계연도 기간동안 상환할 예상금액 기재
- ◆ **(예비비)**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준비비용
- ◆ **(차기이월금)** 수입이 지출 보다 많은 경우, 차년도로 이월 금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필요할 경우, 차기이월금 항목 설정 및 활용 가능

## 1) 사업계획서 서식(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b>사회적협동조합등 사업계획서</b>								
(제1쪽)								
조직 개요	조합명(연합회명)			업종(표준산업분류번호)				
	설립 연월일			업태				
	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연합회 가입 현황(* 사회적협동조합만 작성)							
	주소	주사무소						
		제1 지사무소						
		제2 지사무소						
출자금			백만원					
주 사업 유형		[ ]지역사업형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 ]취약계층 고용형 [ ]위탁사업형 [ ]기타 공익증진형						
조직 연혁	연월일		주요내용					
설립 목적								
의사결정 기구	[ ]조합원 총회 [ ]대의원 총회 [ ]이사회 ※ 중복 표시 가능							
조직도								
임원 현황	직위	성명	경력			직원 겸직 여부		
조합원 현황 ※ 해당유형에만 표기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후원자	계	
	명	명		명	명	명	명	
직원 고용계획	성별	남성	명	여성	명	계	명	
	고용 형태	정규직	명	비정규직	명	계	명	
	취약계층 고용	취약계층	명	비취약계층	명	계	명	
<b>작성방법</b>								
최초 설립신고 시 조직 개요에 조합명(연합회명), 주소, 출자금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 전 알아 두기!

- ❖ **(기준시점)** 신청 당해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회계연도 종료일이 3개월 이하일 경우, **해당연도 및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작성**
- ❖ **(주사업)** 설립인가를 받은 주사업 유형이 어떤 유형인지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주사업 비율은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이상 충족
- ❖ **(제출서류 간 일관성)** 세부 사업 및 예산 등 주요 내용이 수입지출예산서(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의 관련내용과 일치하도록 작성
- ❖ **(단위)** 수입 및 지출의 세부 금액은 **원 단위**로 작성

### I 조직 개요 등

조직 개요	조합명(연합회명)		업종(표준산업분류번호)
	설립 연월일		업태
	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연합회 가입 현황(* 사회적협동조합만 작성)		
	주소	주사무소	
		제1 지사무소	
		제2 지사무소	
출자금		백만원	
주 사업 유형	<input type="checkbox"/> 지역사업형 <input type="checkbox"/>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input type="checkbox"/> 취약계층 고용형 <input type="checkbox"/> 위탁사업형 <input type="checkbox"/> 기타 공익증진형		

- **(조합명)** 사회적협동조합의 명칭을 기재하되, 반드시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문자가 포함되도록 작성
  - 설립 인가 신청 준비 중으로 '업종', '설립 연월일', '업태', '인가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연합회 가입 현황'은 **공란으로 제출**
- **(주소)** 주사무소 소재지(도로명 주소)를 기재
- **(출자금)** 창립총회일 기준 예정 출자금 총액 기재
- **(주사업유형)** 설립인가를 받을 주사업유형에 [√]표기
  - 두 가지 유형 이상의 주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유형에 모두 [√]표기

## I 조직 연혁

조직 연혁	연월일	주요내용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준비과정의 주요 활동 기재

## I 설립 목적

설립 목적	
-------	--

- 정관의 목적(표준정관례 제2조 참고)을 기재하되, 사회적협동조합의 **고유 목적**이 드러나도록 기재

## I 의사결정기구

의사결정 기구	[ ] 조합원 총회 [ ] 대의원 총회 [ ] 이사회 ※ 중복 표시 가능
---------	---

- 주요 의사결정 기구에 [√] 표기
  - 협동조합기본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의사결정 기구인 '조합원총회', '이사회'\*에는 반드시 [√] 표기
  - \* 조합원 수가 10인 미만인 경우 총회의 의결을 받아 이사회를 두지 않을 수 있음 (협동조합기본법 제92조)
  - '대의원총회'의 경우에는 실제 대의원총회를 구성한 경우에만 [√] 표기

## I 조직도

조직도	
-----	--

- 사회적협동조합의 조직 현황을 작성

## I 임원 현황

임원 현황	직위	성명	경력	직원 겸직 여부
	이사장	홍길동	AA 주식회사 본부장	X

- 선출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원의 직위(이사장, 이사, 감사 등), 성명, 주요 경력, 직원 겸직여부(○, ×)를 기재

■ 조합원 현황

조합원 현황 ※ 해당유형에만 표기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후원자	계
	명	명	명	명	명	명

- **창립 총회일 당시의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후원자로 구분하여 기재

※ 조합원 현황의 직원과 직원현황의 직원을 혼동하여 작성하지 않도록 유의

**[참고] 조합원 유형의 개념**

1. 생산자조합원: 협동조합의 생산활동 등에 함께 참여하는 자
2. 소비자조합원: 협동조합의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3. 직원조합원: 협동조합에 고용된 자
4. 자원봉사자조합원: 협동조합에 무상으로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
5. 후원자조합원: 협동조합에 필요한 물품 등을 기부하거나 자금 등을 후원하는 자

■ 직원 고용 계획

직원 고용계획	성별	남성	명	여성	명	계	명
	고용 형태	정규직	명	비정규직	명	계	명
	취약계층 고용	취약계층	명	비취약계층	명	계	명

- **조합원 여부와는 상관없이**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할 인원의 총합을 기재

- 비정규직은 ①기간제 근로자, ②단시간 근로자, ③비전형 근로자로 분류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정규직으로 간주

- ※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
- ※ 단시간 근로자: 직장(일)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
- ※ 비전형 근로자: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정 내(재택, 가내)근로자, 일일(단기)근로자

- 취약계층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2호의 취약계층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취약계층에 해당할 경우 인정

#### [참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2호의 취약계층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11.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3. 그 밖에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 해당 연도 사업계획

〈1〉 지역사업형인 경우

① 지역사업형 (판단기준 : 사업비 / 서비스 공급 비율 중 택일)

구분	사업비 (원)		서비스 공급 (인원/시간/회)	
	직전 연도 결산	해당연도 예산	직전 연도 실적	해당연도 계획
총계 (A)				
지역 사업	소계(B)			
	○○사업			
	□□사업			
	...			
기타 사업	소계			
	○○사업			
	□□사업			
	...			
지역사업 비율(C=B/A)(%)				

- (1단계) 지역사업에 해당하는 사업명과 기타사업에 해당하는 사업명을 구분하여 기재(정관의 '사업의 종류' 참고)
    - 지역사업(주사업) 및 기타사업의 세부 사업명은 수입지출예산서(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제20호 서식) 상 주사업 및 기타사업의 세부사업명과 일치
  - (2단계) 판단기준을 선택하여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계획)에 해당하는 수치 기재
    - ('사업비' 기준) 해당 세부사업의 예산이 수입지출예산서(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제20호 서식)의 '지출' 항목의 예산과 반드시 일치하고, 총계(A)는 반드시 수입지출예산서 '지출'의 '사업비합계'와 일치
    - ('서비스공급' 기준) 서비스공급 인원수, 시간 또는 횟수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 수치를 기재하며, 이 때 서비스공급은 실제 사업을 통해 서비스를 공급받는 대상이 기준
  - (3단계) 지역사업 비율(C=B/A)은 총계(A)에서 지역사업에 대한 소계(B)가 차지하는 비율(C)을 백분율(%)로 계산하여 기재하며, 그 비율은 40% 이상을 충족
-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신청시에는 직전연도 결산 및 실적 작성 불필요

## 〈2〉 취약계층고용형인 경우

### ③ 취약계층 고용형 (판단기준: 인건비 / 직원수 비율 중 택일)

구분	인건비 (원)		직원수 (명)	
	직전 연도 결산	해당연도 예산	직전 연도 결산	해당연도 예산
총계 (A)				
취약계층 (B)				
기타				
취약계층 비율 (C=B/A)(%)				

- **(1단계)** 고용할 취약계층을 판단기준(인건비, 직원수)에 따라 **해당 연도**에 예상하는 수치 기재
  - **(‘인건비’ 기준)** 수입지출예산서(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제20호 서식)상 ‘취약계층 인건비’를 ‘해당연도 예산’ 취약계층(B)에 일치시키고, 취약계층 이외의 ‘인건비’는 ‘해당연도 예산’ 기타에 기재
    - ※ 총계(A)는 총 인건비를 의미하며, 「취약계층 인건비(B)」와 「기타」의 합
    - ※ ‘해당연도 예산’ 은 수입지출예산서의 「취약계층 인건비」, 「인건비」와 일치하도록 작성
  - **(‘직원수’ 기준)**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사회적협동조합에서 **고용되어 있는** 취약계층 인원수를 ‘해당연도 예산’ 취약계층(B)에, 취약계층 이외의 인원수는 ‘기타’에 기재하고, 그 합을 총계(A)에 기재
- **(2단계)** 취약계층 비율(C=B/A)은 **총계(A)**에서 취약계층(B)이 차지하는 **비율(C)**을 **백분율(%)**로 계산하여 기재하며, 그 비율은 40% 이상을 충족
  -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신청시에는 직전연도 결산 작성 불필요

### 〈3〉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인 경우

#### ②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판단기준: 사회서비스 공급 비율)

구분	사회서비스 공급 (인원수/시간/회)	
	직전 연도 결산	해당 연도 계획
총계 (A)		
취약계층 (B)		
기타		
취약계층 비율 (C=B/A)(%)		

- (1단계) 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과 취약계층이 아닌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
    - 서비스공급 인원수, 시간 또는 횟수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 수치를 기재하며, 이 때 서비스 공급은 실제 사업을 통해 서비스를 공급받을 대상이 기준
    - 총계(A)에는 해당 조합에서 제공하려는 모든 사회서비스 공급 계획(인원수/시간/회)을 모두 합한 수치를 기재
  - (2단계) 취약계층 비율(C=B/A)은 총계(A)에서 취약계층(B)이 차지하는 비율(C)을 백분율(%)로 계산하여 기재하며, 그 비율은 40% 이상을 충족
-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신청시에는 직전연도 실적 작성 불필요

#### 〈4〉 위탁사업형인 경우

④ 위탁사업형 (판단기준 : 사업비 비율)		
구분	사업비 (원)	
	직전 연도 결산	해당연도 예산
총 계 (A)		
위탁사업	소 계(B)	
	○○사업(위탁기관)	
	□□사업(위탁기관)	
	...	
자체사업	소 계	
	○○사업	
	□□사업	
	...	
위탁사업 비율(C=B/A)(%)		

- **(1단계)** 위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명과 자체사업에 해당하는 사업명을 구분하여 기재 (정관의 '사업의 종류' 참고)
  - 위탁사업(주사업) 및 기타사업의 세부 사업명은 **수입지출예산서상 주사업 및 기타사업의 세부사업명과 일치**
    - ※ 위탁 사업은 위탁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단순히 위탁사업을 수행할 계획만으로는 위탁사업형으로 인정되기 어려움
  - 위탁사업명 뒤에 **위탁의 주체를 기재**하되, 반드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어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공공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의
    - ※ (예) 구립어린이집위탁사업(00구청)
  - 해당 세부사업의 해당연도 예산이 수입지출예산서의 '수입' 항목의 예산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며, 이 때 총계(A)는 반드시 수입지출예산서의 '수입'의 '③사업비합계'와 일치
- **(2단계)** 위탁사업 비율(C=B/A)은 총계(A)에서 위탁사업(B)이 차지하는 비율(C)를 백분율(%)로 계산하여 기재하며, 그 비율은 40% 이상을 충족
  -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신청시에는 직전연도 실적 작성 불필요

### 〈5〉 기타공익증진형인 경우

⑤ 기타 공익증진형 (판단기준 : 사업비 / 서비스 공급 비율 중 택일)

구분	사업비 (원)		서비스 공급 (인원/시간/회)	
	직전 연도 결산	해당연도 예산	직전 연도 실적	해당연도 계획
총계 (A)				
공익 사업	소계(B)			
	○○사업			
	□□사업			
	...			
기타 사업	소계			
	○○사업			
	□□사업			
	...			
지역사업 비율(C=B/A)(%)				

- (1단계)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명과 기타사업에 해당하는 사업명을 구분하여 기재  
(정관의 '사업의 종류' 참고)
    - 공익사업(주사업) 및 기타사업의 세부 사업명은 **수입지출예산서상** 주사업 및 기타사업의 세부사업명과 일치
  
  - (2단계) 판단기준에 따라 **해당연도**의 예산에 해당하는 수치 기재
    - ('사업비' 기준) 해당 세부사업의 예산이 **수입지출예산서의 '지출' 항목의 예산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며, 이 때 **총계(A)**는 반드시 **수입지출예산서의 '③사업비합계'**와 일치
    - ('서비스공급' 기준) 서비스공급 인원수, 시간 또는 횟수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 수치를 기재하며, 이 때 서비스공급은 **실제 사업을 통해 서비스를 공급받는 대상**이 기준
  
  - (3단계) 공익사업 비율(C=B/A)은 **총계(A)**에서 **공익사업에 대한 소계(B)**가 차지하는 **비율(C)**을 **백분율**로 계산하여 기재하며, 그 비율은 40% 이상을 충족
-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신청시에는 직전연도 결산 및 실적 작성 불필요

## 7. 수입지출 예산서

### 1) 수입지출예산서 서식(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회계연도: 000년도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4.7.22.> <b>사회적협동조합등 수입·지출 예산서</b>							
조직 개요	조합명(연합회명)		업종(표준산업분류번호)				
	설립 연월일		업태				
	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주사무소					
		제1 지사무소					
		제2 지사무소					
출자금		백만원					
주 사업 유형		<input type="checkbox"/> 지역사업형 <input type="checkbox"/>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input type="checkbox"/> 취약계층 고용형 <input type="checkbox"/> 위탁사업형 <input type="checkbox"/> 기타 공익증진형					
수입 (단위: 원)			지출 (단위: 원)				
	구분	금액	구성비(%)	구분	금액	구성비(%)	
주 사업	00사업			주 사업	00사업		
	"				"		
	"				"		
	"				"		
기타 사업	00사업			기타 사업	00사업		
	"				"		
	"				"		
	"				"		
사업비 합계				사업비 합계			
사업외 수입	이자수익			경상비 (판매비와 관리비)	인건비		
	후원금 등				취약계층 인건비		
	"				운영비 등		
	"				"		
출자금				사업외 비용	이자비용		
차입금					잡손실 등		
"					"		
"					출자금 반환		
"				차입금 상환			
"				예비비 등			
합계				합계			
작성방법							
1. 최초 설립인가 시 조직 개요에 조합명(연합회명), 주소, 출자금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2. 예시된 항목 외의 수입 또는 지출 항목이 있을 경우 모두 적습니다. 3. 사회적협동조합의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3호 가에 따라 전체 인건비 총액중 취약계층인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40% 이상인 것을 판단기준으로 하는 경우 인건비와 취약계층 인건비 항목을 구분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 전 알아 두기!

- ❖ **(기준시점)** 신청 당해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회계연도 종료일이 3개월 이하일 경우, **해당연도 및 다음연도** 수입지출예산서도 작성
- ❖ **(제출서류 간 일관성)** 정관의 ‘사업의 종류’(표준정관례 제61조)와 세부 사업은 일치하게 작성
- ❖ **(단위)** 수입 및 지출의 세부 금액은 **원 단위**로 작성
- ❖ **(수입과 지출의 합계가 일치)** 수입 및 지출의 합계는 일치하도록 작성
- ❖ 예시된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작성 불필요반면, 예시된 항목 외의 수입 또는 지출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모두 기재

#### I 회계연도

회계연도: 000년도

- 해당 회계연도를 기재할 것

#### I 조직 개요

조직 개요	조합명(연합회명)		업종(표준산업분류번호)		
	설립 연월일		업태		
	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주사무소			
		제1 지사무소			
		제2 지사무소			
	출자금		백만원		
주 사업 유형		[ ] 지역사업형 [ ] 위탁사업형	[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 ] 기타 공익증진형	[ ] 취약계층 고용형	

- **(조합명)** 사회적협동조합의 명칭을 기재하되, 반드시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문자가 포함되도록 작성
  - 설립 인가 신청 준비 중으로, ‘업종’, ‘설립 연월일’, ‘업태’, ‘인가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은 **공란으로 제출**
- **(주소)** 주사무소 소재지(도로명 주소)를 기재
- **(출자금)** 신청 당시의 설립일 기준 예정 출자금 총액을 기재
- **(주사업유형)** 설립인가를 신청한 주사업유형에 [√]표기
  - 두가지 유형 이상의 주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유형에 모두 [√]표기

## I 수입

수입 (단위: 원)			지출 (단위: 원)		
구분	금액	구성비(%)	구분	금액	구성비(%)
① 주 사업	00사업		주 사업	00사업	
	"			"	
	"			"	
	"			"	
② 기타 사업	00사업		기타 사업	00사업	
	"			"	
	"			"	
	"			"	
③ 사업비 합계			사업비 합계		
④ 사업외 수입	이자수익		경상비 (판매비와 관리비)	인건비	
	후원금 등			취약계층 인건비	
	"			운영비 등	
	"			"	
⑤ 출자금		사업외 비용	이자비용		
⑥ 차입금			잡손실 등		
"			"		
"			출자금 반환		
"			차입금 상환		
"			예비비 등		
<b>합계</b>			<b>합계</b>		

- (①주사업) 정관의 “사업의 종류”(표준정관례 제61조 참고) 중 주사업을 통한 수입 예상 현황(매출 등)을 세부 사업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 (②기타사업) 주사업 이외의 사업을 통한 수입 현황(매출 등)을 세부 사업별로 구분하여 기재
- (③사업비 합계) 주사업과 기타사업에 해당하는 수입 현황(매출 등)의 총합
- (④사업외 수입) 주사업 및 기타사업을 통한 수입 이외의 수입 항목 및 예상 금액을 기재 (손익계산서의 ‘영업외수익’ 항목과 동일)
- (⑤출자금) 해당 회계연도 기간 동안 출자할 출자금 총액 기재
  - ※ ‘조직개요’상 출자금은 **설립당시의 출자금 총액**을 ‘수입지출예산서’의 출자금은 **회계연도말 출자금 총액**을 의미하며, **불일치 할 수 있음**
- (⑥차입금) 해당 회계연도 기간 동안 금융기관 등(개인 포함)으로부터 차입할 차입금 총액을 기재

■ 지출

수입 (단위: 원)			지출 (단위: 원)		
구분	금액	구성비(%)	구분	금액	구성비(%)
주 사업	00사업		① 주 사업	00사업	
	"			"	
	"			"	
	"			"	
기타 사업	00사업		② 기타 사업	00사업	
	"			"	
	"			"	
	"			"	
사업비 합계			③ 사업비 합계		
사업외 수입	이자수익		④ 경상비 (판매비와 관리비)	인건비	
	후원금 등			취약계층 인건비	
	"			운영비 등	
	"			"	
출자금		⑤ 사업외 비용	이자비용		
차입금			잡손실 등		
"			"		
"			⑥ 출자금 반환		
"			⑦ 차입금 상환		
"			⑧ 예비비 등		
<b>합계</b>			<b>합계</b>		

- (①주사업) 정관의 “사업의 종류”(표준정관례 제61조 참고) 중 주사업을 통한 지출 예상액을 세부 사업별로 구분하여 작성
- (②기타사업) 주사업 이외의 사업을 통한 지출 예상액을 세부 사업별로 구분하여 기재
- (③사업비 합계) 주사업과 기타사업에 실제 지출된 비용의 총합
- (④경상비) 협동조합의 일반적인 조직운영에 실제 지출된 비용을 기재
  - 인건비 항목에는 취약계층 인건비를 제외한 인건비를 기재하고, 인건비와 취약계층 인건비를 합하면 총 인건비가 나와야 함
- (⑤사업외비용) 사업비 및 경상비 이외에 부수적 활동에 실제 지출된 비용을 기재(손익계산서의 ‘영업외비용’ 항목과 동일)
  - ※ (예) 이자비용, 기부금 지출, 잡손실 등
- (⑥출자금반환) 해당 회계연도 기간 동안 반환될 출자금 총액 기재
  - 설립 당시의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 상 반환된 출자금이 있을 수 없으므로, ‘0’으로 작성
- (⑦차입금상환) 차입금 중 해당 회계연도 기간 동안 반환할 총액 기재

## 8. 출자 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출자자 명부)

- Ⅰ 출자자(설립동의자)가 ① 개인일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② 법인일 경우 ‘법인명’,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출자좌수 및 출자금액과 해당 출자자의 출자금이 전체 출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기재
- Ⅱ 출자 금액 및 비율 기재시 유의 사항
  - 1좌당 금액이 균일하여야 하며, 모든 조합원이 1좌 이상 출자하여야 함
  -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가 총 출자좌수의 30%를 초과 불가

### 〈출자자 명부 예시〉

○○○ 사회적협동조합 출자자 명부					
※ 1좌당 금액 : 00000원			(단위: 좌, 원, %)		
연번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출자좌수	출자금액	비율
1	○○○	000000-1111111	50	500,000	10
2	△△△	000000-1111111	100	1,000,000	20
3		.			
4		.			
※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30/100을 초과해서는 안 됨					
합 계				5,000,000	100.0



## 10.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 ▮ 합병 또는 분할하여 설립한 경우만 해당

## 11. 주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

### 작성 전 알아 두기!

- ❖ **(구체성기준)** 주사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매우 다양하며, 가능한 한 구체성을 확보한 자료 제출 필요
- ❖ **(세부사업계획)** 주사업 유형에 따라서 입증서류는 다양하나 사업의 구체성 담보를 위하여, 세부사업계획 제출 필요
- ❖ **(일관성)** 제출 서류간 일관성 유지 필요. 제출양식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 내용과 입증 서류(세부사업계획서)간 사업내용 및 예산 계획의 일치 필요

- ▮ **공통 사항 : 세부사업계획서 제출**

- 실행 사업의 세부실행계획 제출

### 〈세부사업계획서 참고 양식〉

#### ○○○ 사회적협동조합 세부사업계획서

- I. 사업 추진 배경
- II. 내외부 환경 분석
- III. 사업 목표
- IV. 사업 추진 방향
- V. 사업 추진 계획

**1. 0000 사업**(※ 정관의 사업 내용을 반영하여 기재)

- 1) 사업 목표
- 2) 세부사업 내용
- 3) 당해연도 세부 계획 및 일정
- 4) 0000사업 예산 편성

수입			지출		
1.0000 판매수입	0,000원×00회	00,000원	1. 인건비	0,000원×0월	00,000원
2. . . .	. . . .	. . . .	2. 강사료	0,000원×0회	00,000원
			3. 임차료	0,000원×0회	00,000원
			. . . .	. . . .	. . . .
합계			합계		

**2. 0000 사업**(※ 정관의 사업 내용을 반영하여 기재)

- 1) 사업 목표
- .....

**VI. 예산 계획**

1. 사업 예산 정리(※ 주사업 및 기타사업등 사업별 수입 지출 정리한 예산안 작성)

사업명	수입			지출		
	AAA 사업	1. 0000 판매수입	0,000원×00회	00,000원	1. 인건비	0,000원×0월
	. . . .	. . . .	. . . .	2. 교육비	0,000원×0회	00,000원
BBB 사업	1. 0000 판매수입	0,000원×00회	00,000원	1. 인건비	0,000원×0월	00,000원
. . . .	. . . .	. . . .		2. 교육비	0,000원×0회	00,000원
	합계			합계		

2. 운영 예산 정리(※ 사업 예산을 제외한 **조직 운영에 경상비 예산** 정리)

기관 운영비		
1. 인건비	0,000원×0월	00,000원
2. 교육비	0,000원×0회	00,000원
***	0,000원×0월	00,000원
합계		

## I 주사업 유형별 입증서류

### <지역사업형>

- **(지역사업형 해당여부)** 해당 사업이 지역사업형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있는 지역 현황 및 사업 필요에 대한 설명 자료
- **(관련자료)** ① 주요 조합원등이 **관련 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경우, 사업 계약서, 사업 결과 보고서 등의 입증 자료 제출, ② **해당 지역의 현황 및 사업의 필요성** 등을 밝힌 설명자료, ③ 지자체 정책 등 관련성 있는 자료 제출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 **(취약계층 대상 명확)** 해당 사업의 대상이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 제출 필요  
- ① 사업의 대상이 **어떠한 유형의 취약계층**이며, ② 전체 서비스 대상 인원 중 취약계층 비율 예측 추계 자료 제공
- **(관련자료)** ① 주요 조합원등이 **관련 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경우, 관련 사업 계약서, 사업 결과 보고서 등의 입증 자료 제출 필요, ② **해당 지역의 현황 및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 등을 밝힌 설명자료 등

### <취약계층 고용형>

- **(취약계층 대상 명확)** 고용 예정인원이 취약계층에 해당하는지 취약계층 입증서류 제출
- **(관련자료)** ① 주요 조합원등이 **관련 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경우, 사업 계약서, 사업 결과 보고서 등의 입증 자료 제출 필요, ② **취약계층 확보 인프라 구축 상황 파악** 및 **고용 연계 기관** 등을 밝힌 설명자료 등

### <위탁사업형>

- **(위탁사업 정보)** 위탁을 받고자 하는 사업이 실제 수행 경험이 있는지 또는 실제 위탁이 가능한지와 주체(국가·지자체) 확인 필요
- **(관련자료)** ① 수행 경험이 있을 경우 위탁사업계약서 등, ② 신규 사업 수행시 기존 사업 공고 등 실제 위탁 가능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③ 위탁의 주체가 국가 또는 지자체 인지를 알 수 있는 자료 등

### <기타공익증진형>

- 주사업이 공익성을 갖추었는지를 알 수 있는 설명자료 및 관련 자료 일체



## 04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이후 절차

1. 설립인가증 발급
2. 설립 사무의 인계
3. 출자금 납입
4. 설립등기
5. 사업자등록

# 04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이후 절차



## 1. 설립인가증 발급

### 시행규칙 제14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인가 신청)

**법 제85조(설립인가 등)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인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설립인가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
2. 설립의 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설립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14조(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인가 신청) ③**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5조 또는 제114조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설립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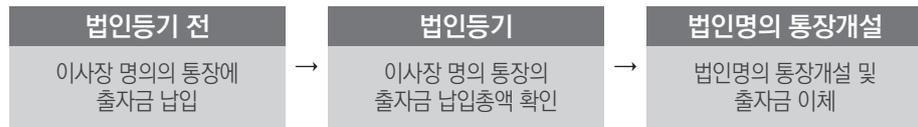
- 설립인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설립인가증(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발급
  -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 연장 가능
- 처리기간의 계산
  - 신고확인증 발급 처리기간에 공휴일(일요일 포함)은 산입하지 않음(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
  -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필요한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음(시행령 제8조제1항)
- 인가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
  - 설립인가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
  - 설립 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 그 밖에 설립인가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2. 설립사무의 인계

- 발기인은 사회적협동조합 인가증을 발급받으면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

## 3. 출자금 납입

- 이사장이 사무를 인수하면 기일을 정하여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함



- 이사장 명의의 계좌로 출자금을 납입하며, 등기시에는 출자금 납입영수증 또는 은행에서 발급한 잔고증명서 제출
  - ※설립인가 신청서상 출자금 납입총액과 통장잔고가 일치해야 함
- 현물출자자는 납입기일 안에 출자목적의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등록, 그 밖의 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사회적협동조합에 제출

## 4. 설립등기

### 법 제106조(설립등기)

**제106조(설립등기)**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인가의 효력은 상실된다.

-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
  - “설립인가를 받은 날”이란 설립인가증이 도달한 날을 의미(법 제109조)
  -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인가의 효력 상실
- 설립등기신청서 기재사항

구분	기재사항	비고
1	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목적, 명칭 및 주된 사무소 소재지
2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3	설립신고 연월일	
4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임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이사장은 이사로도 등기하여야 함)

■ 설립등기신청서와 첨부서류(간인 날인 필요)

구분	신청서와 첨부서류	비고
1	설립등기신청서	1. 목적,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3. 설립신고 연월일 4.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임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등 기재
2	정관	원본 지참 시 사본제출 가능
3	총회의사록	공증 받은 원본 제출
4	설립인가증	
5	임원의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임원 전원 제출, 법인이 임원인 경우 법인의 취임승낙서와 직무수행자의 선임 증명서·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초본 제출
6	대표자의 인감신고서	
7	출자금 총액 납입증명서	금융기관이 작성한 잔고증명서 또는 출자금납입확인서 등 모두 가능 현물출자시 현물출자재산인계서 또는 출자재산영수증
8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9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제출서류는 관할 등기소 마다 다를수 있으니 관할 등기소에 확인 후 제출

## 5. 사업자등록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 신청하며, 사업개시 전 등록신청 가능
  - “사업개시일”이란 제조업의 경우 제조를 개시하는 날, 기타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등을 의미
  - 등록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함이 원칙이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일주일 정도 소요
- 사회적협동조합 사업에 필요한 전용 사무실 확보
  - 집을 주된 사무소로 할 수는 있으나, 사업자등록시 주된 사무소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업을 위한 전용 사무실을 확보하도록 권유
  - ※ 제조업, 인쇄업 등의 경우 전용 공간이 있어야 사업자등록 가능

### ■ 사업자등록증 신청 시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1	설립인가증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2	정관 사본	
3	법인등기부등본	
4	법인명의 임차차계약서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5	출자자명세서	
6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해당 법인에 한함. 허가(등록·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신청서 또는 사업계획서
7	현물출자명세서	현물출자법인에 한함

※ 제출서류는 관할 등기소 마다 다를수 있으니 관할 등기소에 확인 후 제출



# 05 벌칙 및 과태료

# 05 벌칙 및 과태료



- 1. 감독 시행**    ■ 중앙행정기관은 협동조합기본법 제111조(감독)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회적협동조합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법 제111조(감독)
<p><b>제111조(감독)</b>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p> <p>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설립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의 업무상황·장부·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85조에 따른 설립인가 및 절차에 적합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li> <li>2.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li> <li>3.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li> </ol>

- 2.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    ■ 「협동조합 기본법」을 위반한 경우
- (벌칙) 징역형이나 벌금을 부과
  - (과태료)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
- ※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기간을 두어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 협동조합기본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을 준용
  - 「형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개별법령에 따라 처벌

<b>참고 1</b>	<b>벌칙</b>
-------------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벌칙의 경중
가.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사업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법 제117조 제1항제1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투기를 목적으로 협동조합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용하여 협동조합에 손해를 끼친 경우	법 제117조 제1항제2호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한 경우	법 제117조 제2항제1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 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30이상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7조 제2항제1호	
다. 손실보전에 총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 법정적립금을 사용하는 경우	법 제117조 제2항제1호	
라. 당기손실금에 대하여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으로 보전처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7조 제2항제1호	
마.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함)를 감사에게 제출하지 않거나 결산보고서와 감사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7조 제2항제1호	
바. 출자 1좌 금액의 감소하기로 의결했음에도 의결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7조 제2항제1호	
사. 출자감소 의결 후 14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30일 이상의 이의신청 기간을 두고 이의신청할 것을 공고하지 않거나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7조 제2항제1호	
아. 협동조합이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질권을 설정한 경우	법 제117조 제2항제1호	
자. 청산인이 취임 후 지체 없이 협동조합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한 다음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17조 제2항제1호	
차. 청산인이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17조 제2항제1호	
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를 한 경우	법 제117조 제2항제2호	
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받지 않고 집행한 경우	법 제117조 제2항제3호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벌칙의 경중
가.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는 등 공직선거에 관여한 경우	법 제117조 제3항제1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자기 또는 특정인을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행위를 하는 경우 ① 조합원(협동조합 가입신청자 포함)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하는 행위 ②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위의 행위를 하는 경우 ③ 위의 사항에 대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법 제117조 제3항제2호	
다.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이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회원을 호별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하는 경우	법 제117조 제3항제2호	
리.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는 경우	법 제117조 제3항제2호	
마.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 벽보의 부착, 선거 공보의 배부, 소형 인쇄물의 배부,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법 제117조 제3항제2호	

## 참고 2

## 과태료의 부과기준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과태료 부과처분 후의 위반행위로 한정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행위의 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스스로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가. 협동조합등 또는 사회적협동조합등이 법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제1호	100	200
나. 법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문자 또는 이와 유사한 문자를 명칭에 사용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제2호	100	200
다.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법 제3조제5항에 따른 명칭의 사용 금지 또는 수정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19조 제1항제3호	100	200
라.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 법 제22조제2항(법 제76조·제91조 및 제115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합원등 1인의 출자좌수 제한을 초과하게 한 경우	법 제119조 제2항제1호	100	200
마.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 법 제23조제1항(법 제9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합원의 의결권·선거권에 차등을 둔 경우	법 제119조 제2항제2호	100	2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 법 제 46조, 제81조 및 제95조(법 제11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조합원등이 아닌 자에게 협동조합 등의 사업을 이용하게 한 경우	법 제119조 제2항제3호	100	200
사.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법 제49조제2항(법 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96조제2항(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서류비치를 게을리한 경우	법 제119조 제3항제2호	50	100
아.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법 제49조(법 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49조의2(법 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96조(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96조의2(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영의 공개를 게을리한 경우	법 제119조 제3항제3호	50	100
자.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 법 제 94조를 위반하여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의 총사업한도, 이자율, 대출한도, 상호부조의 범위, 상호부조금, 상호부조계약 및 상호부조회비 등을 초과하게 한 경우	법 제119조 제2항제4호	100	200
차.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신고·등기를 게을리한 경우	법 제119조 제3항제1호	50	100
카.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감독기관 또는 총회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 또는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경우	법 제119조 제3항제4호	50	100
타.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19조 제3항제5호	50	100

## 06 제출 첨부 서류 양식 모음

# 06 제출 첨부 서류 양식 모음



구분	인가신청 서류	비고	참고 페이지
1	설립인가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101
2	정관 사본	표준정관례 활용	-
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신청서류 예시 ①	102
4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신청서류 예시 ②	103
5	임원명부(임원이력서 및 사진 포함)	[임원 명부]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106
		[임원 이력서] 신청서류 예시 ③	107
6	사업계획서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108
7	수입·지출예산서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111
8	출자 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신청서류 예시 ④	112
9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113
10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법정 서식 없음	-
11	주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법정 서식 없음	- (83페이지 참고)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4.7.22.>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서

※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설립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법 인	조합명(연합회명)	전화번호	
	소재지		
	이사장(회장)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설립신청 내용	설립동일자 수(명)	출자금 납입총액(원)	창립총회 개최일
	1인당 최저 출자금(원)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만 작성	총자산 대비 출자금 납입총액의 비율(%)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만 작성	
설립목적	<input type="checkbox"/> 지역사회형(「협동조합 기본법」 제 93조제 1항제1호) <input type="checkbox"/>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협동조합 기본법」 제 93조제 1항제 2호)ㄴ <input type="checkbox"/> 취약계층 고용형(「협동조합 기본법」 제 93조제 1항제 3호) <input type="checkbox"/> 위탁사업형(「협동조합 기본법」 제 93조제 1항제 4호) <input type="checkbox"/> 기타 공익증진형(「협동조합 기본법」 제 93조제 1항제 5호)		

「협동조합 기본법」 제 85조제 1항 또는 제 1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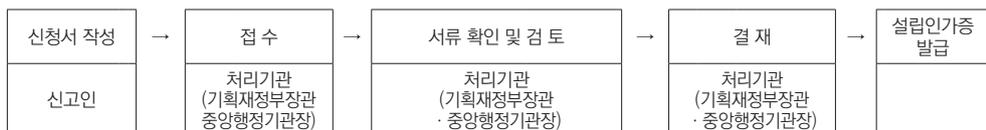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청인

기획재정부장관 · 중앙행정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사본 1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 4. 임원 명부(임원이력서와 사진을 포함합니다) 1부 5. 사업계획서 1부 6. 수입 · 지출 예산서 1부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 8.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또는 설립에 동의한 사회적협동조합) 명부 1부 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협동조합 기본법」 제101조제1항 및 제101조에 따른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 · 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사본 1부 10.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신청서류 예시①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 ○○○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 개최 공고

○○○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에 참여하실 분은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시 : 20 . . (○요일) 오전 ○○시

2. 장소 : ○○시 ○○구 ○○로 ○○○-○, ○○빌딩 ○○○호

### 3. 조합원 자격요건

가.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는 자

나.

### 4. 의결 사항

가. 정관 확정

나. 사업계획 및 예산 확정

다. 임원 선출

라. 설립 경비 등 기타 설립에 필요한 사항

20 . . .

※ 창립총회 공고는 총회개최일 7일 전까지 해야 함(법 제28조⑤, 영 제6조①)

(예) 7.20일에 창립총회를 개최한다면, 민법상 기일 기산에 따라 20일이 아닌(초일은  
산입하지 않음) 19일부터 역산하여 7일이 되는 13일까지 공고

(가칭) ○○○ 사회적협동조합

발기인 대표 ○○○(인)

- 신청서류 예시② 창립총회 의사록

## ○○○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 의사록

1. 총회 개최 공고일 : 20 . . (○요일)

2. 총회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20 . . (○요일) ○○시

나. 장소 : ○○시 ○○구 ○○○로 ○○○-○, ○○빌딩 ○○○호

3. 참석자

가. 재적 설립동의자 : ○○명(개인 ○○명, 법인 ○개)

- ○○○, △△△, □□□, … ▽▽▽(재적 설립동의자 이름 나열)

나. 참석 설립동의자 : ○○명(개인 ○○명, 법인 ○개)

- ○○○, △△△, … ▽▽▽(참석 설립동의자 이름 나열)

4. 총회 안건

- 제1호 의안. 정관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임원 선출의 건

- 제3호 의안. 20○○년 사업계획(안) 및 수입·지출예산(안) 승인의 건

- 제4호 의안. 설립경비 등 기타 설립에 필요 안건

5. 총회 내용

가. 발기인대표 ○○○가 (임시)의장으로 회의를 진행하다.

나. 성원 보고와 개회 선언

- 전체 설립동의자 ○○명 중 ○○명 참석으로 성원되었음을 확인하고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다.

다. 의사록 서기와 기명날인인 지명

- 의장이 회의의 기록과 확인을 위한 서기로 ○○○ 조합원을, 기명날인인으로 ○○○, △△△, … ▽▽▽를 지명하고 수락여부를 확인하여 전원 수락하다.

※ 기명날인인을 별도로 지명하지 않고 설립동의자 중 이사와 감사 등 임원으로 선출된 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여도 무방

## 라. 의사일정 확정

- 의장이 공고된 상정 의안에 대해 설명하고 의사일정 및 의안심의 순서에 따라 진행할 것을 묻고, 전원 동의로 의안 순서를 확정하다.

## 마. 제1호 의안. 정관 승인의 건

- 의장이 ○○○ 조합원에게 정관에 대해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다.
- ○○○ 조합원이 정관의 목적, 조합의 책무, 조합원의 자격 등 각 조항에 대해 배경과 내용을 설명하다.
- 의장이 정관에 대해 질문이 있는지 묻다.
- △△△ 조합원이 정관 제○조에서 '○○○○'를 '△△△△'로 수정하자는 제안을 하다.
- □□□ 조합원이 제○조 제○항의 문구에 '▽▽▽▽▽▽'를 추가하자는 제안을 하다.
- 의장이 정관 제○조, 제○조 제○항의 수정안에 대해 조합원의 동의와 재청을 묻다.
- ◇◇◇ 조합원의 재청, 전원 동의로 수정인이 성립되다.
- 의장이 정관 제○조, 제○조 제○항을 제안과 같이 수정하여 정관을 확정하는 것에 대한 승인을 묻고, 조합원 전원의 동의로 수정안을 수정하고 정관을 확정하다.

## 바. 제2호 의안. 임원 선출의 건

- (후보추천 예시①) 의장이 임원 후보를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하여 이사로 ○○○, △△△, ... ▽▽▽, 감사로 ◇◇◇가 추천되다.

## 〈이사후보〉

- ○○○(발기인 대표)
- △△△(발기인, ○○○○ 대표)

...

## 〈감사후보〉

- ○○○(발기인)
- 임원후보 전원이 인사말을 하다.
- 의장이 추천된 임원 후보 전원을 거수로 선출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이에 대해 조합원 전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여 선출방법을 확정하다.
- 의장이 추천된 임원 후보 전원에 대한 찬성하는 조합원은 거수할 것을 주문하여 전원이 동의하여 후보 전원이 임원으로 선출되다.
- 의장이 선출된 임원 전원에 대해 수락여부를 묻고 선출된 임원 전원이 수락하다.
- 의장이 이사로 선출된 자 가운데 이사장 후보를 추천해 줄 것을 주문하고, ○○○ 이사를 이사장으로 추천하다.

- ▽▽▽ 이사가 다른 후보가 없는지 확인하고, ○○○ 이사를 이사장으로 선출하는 것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주문하여 전원 동의로 선출하다.

사. 제3호 의안. 20○○년 사업계획(안) 및 수입·지출예산(안) 승인의 건

- 의장이 ○○○ 조합원에게 20○○년 사업계획(안) 및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다.
- ○○○ 조합원이 20○○년 사업계획(안) 및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해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에게 설명하다.
- 의장이 20○○년 사업계획(안) 및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해 승인해 줄 것을 주문하고 조합원 전원의 동의로 승인하다.

아. 제4호 의안. 설립경비 등 기타 설립에 필요 안건

- 의장이 협동조합 설립과정에서 경비가 소요된 내역 및 설립 시까지 소요 될 예상 경비를 보고하고 설립에 필요한 경비는 우선 ○○○○○○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차후 설립인가 후 출자금 납입이 되면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 승인해 줄 것을 주문하다.
- 조합원 ○○○이 동의하고 조합원 △△△의 재청 및 조합원 전원의 동의로 승인되었음을 선언하다.

자. 폐회 선언

- 의장이 참석자들에게 상정할 다른 안건이 있는지를 묻고 없음을 확인한 후 폐회에 대한 의사를 묻고 조합원들에게 의결사항을 재차 확인한 다음 ○○○ 사회적협동조합 창립 총회 폐회를 선언하다.

20 . . .

### (가칭) ○○○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

이사장 ○ ○ ○ (인)  
 이사 또는 의사록 기명날인인 ○ ○ ○ (인)  
 이사 또는 의사록 기명날인인 ○ ○ ○ (인)  
 이사 또는 의사록 기명날인인 ○ ○ ○ (인)



■ 신청서류 예시 ③ 임원 이력서

사진 (3x4)				사회적협동조합 임원 이력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	
				자택전화		이메일	@
휴대전화							
주소		( 도로명 주소 )					
등록기준지		( 도로명 주소 )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여부		※ 협동조합기본법 제36조(임원 등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년	월	일	학력 / 경력 / 자격 사항		비 고		
위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20 . .							
작성자 : ○ ○ ○ (인)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14.7.22.>

## 사회적협동조합등 사업계획서

(제1쪽)

조직 개요	조합명(연합회명)		업종(표준산업분류번호)				
	설립 연월일		업태				
	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연합회 가입 현황(* 사회적협동조합만 작성)						
	주소	주사무소					
		제1 지사무소					
제2 지사무소							
출자금		백만원					
주 사업 유형	<input type="checkbox"/> 지역사업형 <input type="checkbox"/>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input type="checkbox"/> 취약계층 고용형 <input type="checkbox"/> 위탁사업형 <input type="checkbox"/> 기타 공익증진형						
조직 연혁	연월일		주요내용				
설립 목적							
의사결정 기구	[ ] 조합원 총회    [ ] 대의원 총회    [ ] 이사회 ※ 중복 표시 가능						
조직도							
임원 현황	직위	성명	경력			직업 검직 여부	
조합원 현황 <small>※ 해당유형에만 표기</small>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후원자	계	
	명	명	명	명	명	명	
직원 고용계획	성별	남성	명	여성	명	계	
	고용 형태	정규직	명	비정규직	명	계	
	취약계층 고용	취약계층	명	비취약계층	명	계	

### 작성방법

최초 설립신고 시 조직 개요에 조합명(연합회명), 주소, 출자금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2쪽)

해당 연도 사업계획 (\* 해당 내용만 작성)

① 지역사업형 (판단기준: 사업비 / 서비스 공급 비율 중 택일)

구분	사업비 (원)		서비스 공급 (인원수/시간/회)	
	직전 연도 결산	해당 연도 예산	직전 연도 실적	해당 연도 계획
총계 (A)				
지역 사업	소계(B)			
	○○사업			
	□□사업			
	...			
기타 사업	소계			
	○○사업			
	□□사업			
	...			
지역사업 비율(C=B/A)(%)				

②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판단기준: 사회서비스 공급 비율)

구분	사회서비스 공급 (인원수/시간/회)	
	직전 연도 실적	해당 연도 계획
총계 (A)		
취약계층(B)		
기타		
취약계층 비율 (C=B/A)(%)		

③ 취약계층 고용형 (판단기준: 인건비 / 직원수 비율 중 택일)

구분	인건비 (원)		직원수 (명)	
	직전 연도 결산	해당 연도 예산	직전 연도 결산	해당 연도 예산
총계 (A)				
취약계층(B)				
기타				
취약계층 비율 (C=B/A)(%)				

(제2쪽)

구분			사업비 (원)	
			직전 연도 결산	해당연도 예산
총 계 (A)				
위탁사업	소 계(B)			
	○○사업(위탁기관)			
	□□사업(위탁기관)			
	...			
자체사업	소 계			
	○○사업			
	□□사업			
	...			
위탁사업 비율(C=B/A)(%)				

구분			사업비 (원)		서비스 공급 (인원/시간/회)	
			직전 연도 결산	해당연도 예산	직전 연도 실적	해당연도 계획
총 계 (A)						
공익사업	소 계(B)					
	○○사업					
	□□사업					
	...					
기타사업	소 계					
	○○사업					
	□□사업					
	...					
지역사업 비율(C=B/A)(%)						

작성방법

최초 설립인가 신청 시 해당 연도 예산 또는 해당 연도 계획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4.7.22.>

## 사회적협동조합등 수입·지출 예산서

회계연도: 000년도							
조직 개요	조합명(연합회명)		업종(표준산업분류번호)				
	설립 연월일		업태				
	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주사무소					
		제1 지사무소					
		제2 지사무소					
출자금		백만원					
주 사업 유형		<input type="checkbox"/> 지역사업형 <input type="checkbox"/>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input type="checkbox"/> 취약계층 고용형 <input type="checkbox"/> 위탁사업형 <input type="checkbox"/> 기타 공익증진형					
수입 (단위: 원)			지출 (단위: 원)				
구분	금액	구성비(%)	구분	금액	구성비(%)		
주 사업	00사업		주 사업	00사업			
	"			"			
	"			"			
	"			"			
기타 사업	00사업		기타 사업	00사업			
	"			"			
	"			"			
	"			"			
사업비 합계			사업비 합계				
사업외 수입	이자수익		경상비 (판매비와 관리비)	인건비			
	후원금 등			취약계층 인건비			
	"			운영비 등			
	"			"			
출자금			사업외 비용	이자비용			
차입금				잡손실 등			
"				"			
"				출자금 반환			
"			차입금 상환				
"			예비비 등				
합계			합계				
작성방법							

1. 최초 설립인가 시 조직 개요에 조합명(연합회명), 주소, 출자금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2. 예시된 항목 외의 수입 또는 지출 항목이 있을 경우 모두 적습니다.
3. 사회적협동조합의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3호 가에 따라 전체 인건비 총액중 취약 계층인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40% 이상인 것을 판단기준으로 하는 경우 인건비와 취약계층 인건비 항목을 구분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재활용품)]







기획재정부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www.coop.go.kr](http://www.coop.go.kr)